

위험평가 위험관리도(운영위험) 지표 정의서(24.1월 개정)

□ 평가지표 목록

▶ 각 지표의 평가기준을 상세히 확인할 것

(일부 문구 수정의 경우 아래 평가지표 목록에 미기재)

※ 신규 지표 중 실적산출을 위해 자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지표는 해당없음(실적산출 개선 중)으로 입력가능
 '25년 입력부터 필수지표로 변경 예정

연번	인덱스	배점	지표명	수정 사항
1-1 내규마련 (170점)				
1	O.11.01.01	10	경영 및 인사 평가제도	
2	O.11.01.02	5	직원알기제도 내규 마련 여부	
3	O.11.01.03	10	AML/CFT 보안규정 마련 여부	
4	O.11.01.04	20	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배점 변경(30→20)
5	O.11.01.05	10	비대면 채널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6	O.11.01.06	10	실제소유자 내규 마련 여부	
7	O.11.01.07	5	거래거절 내규 마련 여부	
8	O.11.01.08	10	지속적인 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배점 변경(20→10)
9	O.11.01.09	10	Watch List 내규마련 여부	배점 변경(20→10)
10	O.11.01.10	5	송금자 정보 내규 마련 여부	
11	O.11.01.11	5	제3자 및 아웃소싱의 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12	O.11.01.12	5	가상계좌 고객 확인 내규 마련 여부	
13	O.11.01.13	5	외국환거래 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14	O.11.01.14	5	종합자산관리고객확인내규 마련 여부	

연번	인덱스	배점	지표명	수정 사항
15	O.11.01.15	5	고위험국가 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16	O.11.01.16	5	거래처 AML/CFT 내규 마련 여부	
17	O.11.01.17	20	AML/CFT 내규 마련 여부	배점 변경(30→20)
18	O.11.01.18	5	신상품 AML/CFT 내규 마련 여부	
19	O.11.01.19	5	신상품 AML/CFT 전담부서 승인	
20	O.11.01.20	10	STR를 지침 마련 여부	배점 변경(20→10)
21	O.11.01.21	5	전사위험평가 STR를 반영 여부	
1-2 전담조직 (110점)				
22	O.11.02.01	40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 규모	겸임 인정기준 변경(50%→30%), 배점 변경(20→40)
23	O.11.02.02	15	전담인력 업무연속성	
24	O.11.02.03	15	고객확인 전담인력 규모	겸임 인정기준 변경(50%→30%), 배점 변경(5→15)
25	O.11.02.04	10	AML/CFT 책임자 직급	직급구분 변경
26	O.11.02.05	10	내규수립/업무수행 승인자 수준	직급구분 변경
27	O.11.02.06	10	보고책임자 직급수준	
28	O.11.02.07	10	보고책임자 역할과 책임 평가	
2-1 이사회·경영진 보고 (30점)				
29	O.12.01.01	10	이사회 보고 실적	배점 변경(5→10)
30	O.12.01.02	20	최고경영자 보고실적	
2-2 AML 교육 (100점)				
31	O.12.02.01	10	이사회 교육 실적	평가내용 조정
32	O.12.02.02	10	경영진 교육 실적	평가내용 조정
33	O.12.02.03	48	직원 교육 실적	평가내용 조정, 배점 변경(100→48)
34	O.12.02.04	30	AML/CFT 전문가 양성 실적	전문가 기준 변경, 배점 변경(20→30)
35	O.12.02.05	2	AML/CFT 전문교육 실적	추가지표
2-3 독립적 감사 (50점)				

연번	인덱스	배점	지표명	수정 사항
36	O.12.03.01	10	지점 운영실태 점검 실적	
37	O.12.03.02	5	지점 지적사항 개선 실적	
38	O.12.03.03	15	독립적 감사 수행 실적	배점 변경(10→15)
39	O.12.03.04	5	독립적 감사 지적사항 개선 실적	
40	O.12.03.05	15	자금세탁방지 감사팀 전문성 수준	전문가 기준 변경, 배점 변경(10→15)
2-4 징계 및 포상 (20점)				
41	O.12.04.01	5	금융회사 징계 실적	
42	O.12.04.02	5	임직원 외부 징계실적	
43	O.12.04.03	5	감독당국 과태료 부과 실적	
44	O.12.04.04	5	임직원 대내외포상 실적	
2-5 취약점 점검 (80점)				
45	O.12.05.01	5	직원알기제도 실행 실적	배점 변경(10→5)
46	O.12.05.02	5	임직원 관련 룰 규모	
47	O.12.05.03	5	AML/CFT 자료보관 점검	
48	O.12.05.04	5	보고PC 보관자료 삭제 실적	
49	O.12.05.05	5	AML/CFT 정보보안 점검 실적	
50	O.12.05.06	30	AML 취약점 점검 실적	배점 변경(20→30)
51	O.12.05.07	20	AML/CFT 위험 경감/개선실적	
52	O.12.05.08	5	신상품 위험평가 실적	
3-1 CDD 이행수준 (145점)				
	O.13.01.01	0	고객확인상급자재확인실적	삭제
53	O.13.01.02	20	법인고객 고객확인 재확인 실적	지표명 변경, 배점 변경(30→20)
54	O.13.01.03	20	개인 및 임의단체 고객확인 재확인 실적	지표명 변경, 배점 변경(30→20)
55	O.13.01.04	20	지속적인 고객확인 수행 실적	배점 변경(30→20)
56	O.13.01.05	5	제3자 및 아웃소싱의 고객확인 의무 점검 실적	

연번	인덱스	배점	지표명	수정 사항
57	O.13.01.06	5	외국환거래 고객확인 수행 실적	
58	O.13.01.07	5	외국환거래 고객확인 재확인 실적	
59	O.13.01.08	5	외국환거래 지속적인 고객확인 실적	
60	O.13.01.10	5	일회성 금융거래고객 재확인 실적	추가지표
61	O.13.01.11	20	법인고객 검증 실적	추가지표
62	O.13.01.12	20	개인 및 임의단체 검증 실적	추가지표
63	O.13.01.13	20	주기별 고객확인 내역 점검 실적	추가지표, 샘플점검 시 해당없음 처리
3-2 EDD 이행수준 (35점)				
64	O.13.01.09	10	고위험국가 고객확인 재확인 실적	분류변경, 배점 변경(5→10)
65	O.13.02.01	5	종합자산관리대상자 DB화	
66	O.13.02.02	20	주기적 고객위험평가 수행 실적	추가지표
3-3 Watch List 관리 (40점)				
67	O.13.03.01	10	신규고객 Watch List 대사 재확인 실적	
68	O.13.03.02	10	Watch List 최신화 주기	
69	O.13.03.03	10	최신 Watch List 기준 일괄 확인 실적	
70	O.13.03.04	10	Watch List 고객확인 수행실적	배점 변경(20→10)
4-1 STR 관리 (75점)				
71	O.14.01.01	5	가상계좌 관련STR룰 규모	
72	O.14.01.02	5	종합자산관리관련 STR룰 규모	
73	O.14.01.03	5	종합자산관리관련 STR 실적	
74	O.14.01.04	20	외부정보 활용을 통한 STR 실적	배점 변경(10→20)
75	O.14.01.05	20	정성적 STR 보고실적	배점 변경(10→20)
76	O.14.01.06	20	STR 룰 유효성 점검 실적	배점 변경(10→20)
4-2 STR 평가 (75점)				
77	O.14.01.07	5	CTR보고 대비 고액현금 STR 보고 비율	

연번	인덱스	배점	지표명	수정 사항
78	O.14.01.08	5	외환 당타발 거래보고 대비 당타발 STR 보고 비율	
79	O.14.01.09	20	기초 분석율 (필수지표)	
80	O.14.01.10	20	상세 분석율 (필수지표)	
81	O.14.01.11	20	STR 반려율	
82	O.14.01.12	5	반려 STR 미보고율	
83	O.14.01.13	30	법집행기관 제공 (필수지표)	
84	O.14.01.14	20	STR 충실도	배점 변경(30→20)
4-3 CTR 평가 (20점)				
85	O.14.02.01	10	CTR 충실도	
86	O.14.02.02	10	CTR 보고 오류율	

□ 평가지표 세부 적용기준

1. 내부통제 체계구축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내규마련	(O.11.01.01) 경영 및 인사 평가제도 (10점, 절대평가)	<p>[지표] 인사평가, 경영평가 등 평가 시 자금세탁방지 운영 성과 등을 반영 했는지 여부</p> <p>[설명] 인사관리, 경영관리 제도에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도록 포함 * 예 ① 매년 자금세탁방지 부서에서 지점(전 부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사 자금세탁방지 이행 수준 평가(통제 효과성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 ②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사평가 및 경영평가 반영</p> <p>[산정 기준/범위]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인사평가 및 경영평가 제도에서 AML/CFT 제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규정 확인 ① 인사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자금세탁방지 업무실적이 반영된 규정(지침)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② 경영평가 반영여부: 경영평가 항목에 자금세탁방지 업무실적이 반영된 규정(지침)이 준비 되어 있는 경우</p> <p>[산출식] AML/CFT 제도 운영 및 평가를 내규에 반영한 수준</p> <p>[입력항목] 내규 수준(구분-해당번호입력)</p>	<p>금융회사작성</p> <p>□구분 ①둘 다 규정마련(10점) ②둘 중 하나만 규정마련(5점), ③없음(0점)</p>
내규마련	(O.11.01.02) 직원알기제도 내규 마련 여부 (5점, 절대평가)	<p>[지표] 임직원 채용 및 임명 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위한 직원알기제도 내규 수준</p> <p>[설명] 임직원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직원알기제도(Know Your</p>	<p>금융회사작성</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Employee)를 운영하도록 내규를 정의하며 내규의 절차가 원활히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직원알기제도를 위한 지침에 포함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내 및 국외 신규 채용시 직원 신원정보 확인 및 검증 나. 임직원에 대해 PEP 여부 등 평판위험 확인 다. 임직원에 대해 요주의인물 여부 확인 라. 교육 및 지속적인 직원알기제도 수행 마.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 임직원이 전제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개선조치 수립 바. 투자·대출·위탁자산운영 부문에서 직원이 자금세탁 범죄와 연계되지 않도록 조치 사. 고객과 임직원이 전제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활동 및 금융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틀 운영 및 후속조치 절차 마련 등 3. 임직원: 국내 및 국외(해외지점 및 자회사 포함) 임직원 4. 수행 시점: 채용, 임명 및 재직 중 주기적으로 수행 5. 점검 내용: 기관 내부적 결격사유, Watch List, PEP 등 해당 여부 <p>[산출식] 직원알기제도 내규(지침) 수준</p>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p>□여부</p> <p>①지침 운영 (5점)</p> <p>②지침 미운영 (0점)</p>
내규마련	(O.11.01.03) AML/CFT 보안규정 마련 여부 (10점, 절대평가)	<p>[지표] AML/CFT 관련 부문에 대한 정보보안기준 마련 여부 평가</p> <p>[설명] AML/CFT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정보에 대한 보안규정을 정의하고 수행해야 함</p>	<p>금융회사작성</p> <p>□구분</p> <p>①보안기준이 없는</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AML/CFT 관련 정보보안규정의 존재여부, 보안규정의 범위를 선택 3. 보안규정 수준 중 선택 (오름차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기준 없음/ 일반 사내 정보보안기준 준용/ AML시스템 대상 정보보안 기준 수립 * 사내 정보보안 규정에 AML관련시스템 리스트 및 AML 정보(STR,CTR 등)가 모두 명시되어 있다면 AML시스템 대상 보안기준으로 처리 가능 <p>[산출식] AML/CFT 관련 보안규정의 범위</p> <p>[입력항목] 내규 수준(구분-해당번호입력)</p>	<p>경우(0점)</p> <p>② 일반 사내보안기준 준용하며 별도의 보안 기준이 마련 되어있지 않은 경우 또는 보고PC에 한하여 별도의 보안기준 마련(5점)</p> <p>③ AML시스템 대상 정보보안 기준 마련(10점)</p>
내규마련	(O.11.01.04) 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20점, 절대평가)	<p>[지표] 고객확인의무 절차의 적정성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함 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 실제 소유자 뿐만아니라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함 2. 금융회사 및 DNFBP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함 3.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중 	<p>금융회사작성</p> <p>□구분</p> <p>① 전부있음(20점) ② 5/7있음(15점) ③ 3/7있음(10점) ④ 1/7있음(5점) ⑤ 없음(0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료하여야 함</p> <p>4.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및 DNFBP는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2. 고객확인 의무 수행 절차/지침: 고객확인 의무 수행 대상, 확인정보, 검증정보, 승인절차 등 전반적인 통제절차를 정의</p> <p>가. 고객유형별 세분화된 분류</p> <p>나. 고객유형별 또는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별 CDD 필수정보, EDD 필수정보 구분</p> <p>다. 고객유형별 또는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별 신원검증 절차 및 필수서류 구분</p> <p>라. 개인, 법인 실제소유자 확인, 검증절차 및 필수서류 구분</p> <p>마. CDD/EDD 정보 및 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방법 및 절차 마련</p> <p>바. CDD/EDD 검증조직 및 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 명시</p> <p>사. 고객확인 대상거래에 대한 분류 및 누락여부 모니터링 절차 등</p> <p>[산출식] 고객확인 내규 수준 = (내규에 정의된 고객확인 의무 관련 내용 건수) ÷ (고객확인 의무 절차/지침 내용 건수)</p> <p>[입력항목] 내규 수준(구분-해당번호입력)</p>	
내규마련	(O.11.01.05) 비대면 채널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10점, 절대평가)	<p>[지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고객확인 절차의 적정성 평가</p> <p>[설명]</p> <p>1. 비대면채널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가 높은 상품/서비스에 해당함</p> <p>2. 금융기관 및 DNFBP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품/서비스 제공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p>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2. 비대면 채널에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 고객확인 방식, 주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등</p> <p>가. 비대면 채널에서 고객확인 방법: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로 얼굴 대사, 신용카드 등 활용, 기존 실명계좌를 활용, 바이오인증, 신원증빙관련 공공서류 등</p> <p>나. 거래금액대별 처리 방법: 소액인 경우 위협크기가 작으므로 간략한 확인, 고액인 경우 신원 확인 강화</p> <p>다. 상품/고객/국가/채널별 위험평가절차 정의</p> <p>라. 고위험인 경우 거래 목적 및 자금원천 확인, 기타 추가정보 확인방법 정의</p> <p>마.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위한 재확인 주기 설정 및 방법</p> <p>바. 비대면 채널에서 고객확인이 완료한 고객이 가능한 상품 기준, 금액 기준 설정</p> <p>사. 비대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EDD 수행 절차</p> <p>아. 고객에 대한 필수 수집대상 정보 정의, CDD기본 정보 수집 및 고위험일 경우 EDD 필수 수집대상 정보 정의</p> <p>자. 비대면 고객에 대한 Watch List,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대사방법 정의</p> <p>[산출식] 비대면채널 고객확인 내규 수준 = (내규에 정의된 고객확인 지침 건수) ÷ (비대면채널 고객확인 지침 건수)</p> <p>[입력항목] 내규 수준(구분-해당번호입력)</p>	<p>□구분</p> <p>① 전부있음(10점)</p> <p>② 6/9있음(7점)</p> <p>③ 3/9있음(4점)</p> <p>④ 없음(0점)</p> <p>※ 해당없음 (비대면서비스 없음)</p>
내규마련	(O.11.01.06) 실제소유자 내규	[지표] 실제소유자 신원정보 검증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마련 여부 (10점, 절대평가)</p>	<p>[설명]</p> <p>1.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 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함 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실제소유자확인 상세 절차와 방법: 가. 개인고객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 프로그램 마련(질문서 작성 등) 나. 법인 고객유형별 세분화된 실제소유자 확인 및 검증 절차 다. 개인, 법인 등 고객유형별 세분화된 실제소유자 확인 및 검증 문서 정의 라. 실제소유자 검증조직, 역할 및 책임 정의 ※ 고객유형(예시): 영리법인,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 종중 등의 임의단체, 미성년자 등</p> <p>[산출식] 실제소유자확인 내규 수준 = (내규에 정의된 실제소유자 확인 지침 건수) ÷ (실제소유자확인 상세 절차와 방법 건수(4))</p> <p>[입력항목] 내규 수준(구분-해당번호입력)</p>	<p>□구분 ①전부있음(10점) ②3/4있음(7점) ③2/4있음(4점) ④1/4있음(1점) ⑤없음(0점)</p>
<p>내규마련</p>	<p>(O.11.01.07) 거래거절 내규 마련 여부</p>	<p>[지표] 고객확인 의무 이행 실패 시 거래거절 절차에 대한 내규 정의</p> <p>[설명]</p>	<p>금융회사작성</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5점, 절대평가)	<p>1. 신규 고객 또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고객은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함</p> <p>2.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함</p> <p>3.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거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함</p> <p>4. 요주의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5. 수취금융기관은 전신송금에 의해 제공받은 송금자 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정보의 제공을 송금 또는 중개 금융기관에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음</p> <p>6.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운용하는 업무 지침에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2. 거래거절: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요주의인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맺을 수 없음</p> <p>3. 거래거절 방법 및 절차</p> <p>가. 거래거절 세부요건</p> <p>나. 거래거절 방법</p> <p>다. 거래거절 시 승인절차</p> <p>라. 거래거절 시 관리방안 등</p> <p>[산출식] 고객확인 의무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거래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내규 존재 여부</p>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p>□여부</p> <p>①있음(5점)</p> <p>②없음(0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내규마련	(O.11.01.08) 지속적인 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10점, 절대평가)	<p>[지표] 지속적인 고객확인 절차의 적정성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운용하는 업무지침에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을 포함하여야 함 2.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대한 업무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기관 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 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다.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 3.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야 함 4.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등 Watch List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지속적인 고객확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최초 거래 시" 뿐만 아니라 고객 위험도에 따라 주기를 설정하여 고객확인을 재이행 3. 지속적인 고객확인의 방법과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객별(고객 유형별) 지속적인 재확인 주기 지정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구분</p> <p>①전부있음(10점) ②4/5있음(8점) ③3/5있음(5점) ④2/5있음(3점) ⑤없음(0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나. 재이행 주기 도래이전 지속적인 고객확인 수행절차 마련 다. 고객 유형별 기간 경과별 지속적인 재확인 방법 및 절차 마련 라. 지속적인 재확인 비율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마련 마. 고객에게 재확인 주기 공지절차 마련 (대면거래, 비대면거래 모두 포함)</p> <p>[산출식] 지속적인 고객확인 내규 수준 = (내규에 정의된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 수행을 위한 방법 및 절차) ÷ (지속적인 고객확인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침)</p> <p>[입력항목] 내규 수준(구분-해당번호입력)</p>	
내규마련	(O.11.01.09) Watch List 내규 마련 여부 (10점, 절대평가)	<p>[지표] Watch List 대사 절차의 적정성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Watch List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함 Watch List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나.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라. 기타 (금융회사에서 AML/CFT를 위한 요주의 인물 등)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금융기관 및 DNFBP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 상품/서비스 계약(계좌 개설)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고위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여부 ①있음(10점) ②없음(0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경영진의 승인 하에 거래를 유지해야 함</p> <p>5. 지속적으로 PEP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PEP인 경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p> <p>6. PEP확인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수행되면 고위험 고객을 식별하지 못하여 필요한 통제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및 DNFBP에 대한 신뢰성 악화로 제재를 받게 됨</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2. Watch List 대사 대상(예시)</p> <p>가. 개인 또는 법인 외국인 고객, 외국인 대리인, 외국인 법인 대표자, 외국인 제3자 담보제공자, 외국인 보험수익자, 외국인 공동계좌주, 외국인 보험금 납입자, 기타 외국인 등</p> <p>3. Watch List 대사 절차(예시)</p> <p>가. Watch List 수행대상 및 대상별 전결규정</p> <p>나. 신규 고객(고객확인 대상 포함)에 대한 Watch List 필터링 수행방법 및 절차</p> <p>다. Watch List 업데이트 주기 및 절차</p> <p>라. Watch List 변경시 기존 고객에 대한 Watch List 필터링 수행방법 및 절차</p> <p>마. 고객정보(국적, 영문이름 등) 변경시 Watch List 필터링 수행방법 및 절차</p> <p>바. 필터링 시 매칭 비율 및 적용한 기법 명시</p> <p>사. Watch List 매칭 시 인터넷 자료점검 등 당사자 확인 및 승인절차 등</p> <p>[산출식] 내규에 Watch List 대사 절차 및 방법 수립 여부</p>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내규마련	(O.11.01.10) 송금자 정보 내규	[지표] 송금자 정보의 확인 및 요청절차의 적정성 평가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마련 여부 (5점, 절대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신송금: 고객이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2. 금융기관 및 DNFBP는 100만원(외화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외 전신 송금에 대하여 고객(송금자)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의 가격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기준으로 함 3. 송금금융기관은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송금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금융기관 또는 수취금융기관에 제공해야 함 4. 중개금융기관은 송금관련 정보를 송금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이를 수취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5. 수취금융기관은 완전한 송금자 정보가 없는 전신송금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위험기반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6. 수취금융기관은 전신송금에 의해 제공받은 송금자 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정보의 제공을 송금 또는 중개 금융기관에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음 7.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제공 정보·환산 기준·개인지갑 또는 해외가상자산사업자로의 이전 시 요구되는 사항을 적절히 내규에 반영하여야 함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중개 또는 수취 금융회사에서 송금 금융회사에 송금자에 대한 정보요청 시 절차 3. 정보요청 상대방 확인절차, 정보 제공 승인절차, 정보제공 기록보관 등의 방법 및 절차 수립 여부 4.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 	<p>□여부</p> <p>①있음(5점)</p> <p>②없음(0점)</p> <p>※ 해당없음 (전신송금 불제공)</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p> <p>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p> <p>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p> <p>-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p> <p>[산출식] 송금자 정보의 확인 및 요청절차 수립 여부 [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내규마련	(O.11.01.11) 제3자 및 아웃소싱의 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5점, 절대평가)	<p>[지표] 제3자 및 아웃소싱 업체의 고객확인 의무에 대한 규정 수립</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기관 및 DNFBP가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당해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임 2. 제3자는 AML/CFT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함 3. 고객확인을 제3자가 하는 경우 최종책임은 당해 금융기관 및 DNFBP에 있음 4. 아웃소싱은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지 않지만 금융기관 및 DNFBP의 통제를 기반으로 금융기관 및 DNFBP를 대신하여 고객확인 조치를 효과적으로 구현해야 함 5. 「금융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로 규정한 것은 고객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p>[산정 기준/범위]</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여부</p> <p>①있음(5점) ②없음(0점)</p> <p>※ 해당없음 (제3자 고객확인 없음)</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2. 금융회사 및 DNFBP는 다른 기관과 업무제휴 시 실명확인 책임소재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 간 업무제휴 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p> <p>3. 제3자와의 업무협약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p> <p>가. 제3자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할 것</p> <p>나. 제3자는 위험평가 결과, CDD/EDD 정보, 실제소유자 정보, 의심거래 징후관련 판단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p> <p>다. 제3자는 금융기관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 확인과 관련된 문서 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p> <p>4. 아웃소싱 계약서 포함사항</p> <p>가. CDD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각사의 역할 및 책임 명시</p> <p>나. 위탁회사의 고객확인의무 절차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수행</p> <p>다. 고객확인 관련 정보 및 관련서류 제공의무, 기록보관 의무 등</p> <p>라.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위탁사 감사/검사/점검 요구사항 등의 조항 반영</p> <p>[산출식] 내규 중에 제3자 및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위탁방법 및 절차, 책임규정, 계약서 반영 절차 수립 여부</p> <p>[지표부가설명]</p> <p>1.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으로 현재 업무규정 등에 제3자 및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위탁방법 및 절차(위험평가 결과, CDD/EDD 정보, 실제소유자정보, 의심거래 징후 관련 판단기초자료 등), 책임규정, 계약서 반영 절차 마련 여부</p> <p>2. 제3자는 보통 위탁기관에서 의뢰한 고객 서비스에 대해 위탁기관과 독립적으로 기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CDD이행을 위해 자체절차를 운영</p> <p>3. 아웃소싱과는 다르며 수탁기관이 고객과 자체 비즈니스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위탁 기관이</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이를 이용하기 위해 위탁 (예: 보험사가 은행에 보험 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방카슈랑스 등)</p> <p>4. 보험대리점, 대출 모집인 등은 제3자로 볼 수 없음</p>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내규마련	(O.11.01.12) 가상계좌 고객 확인 내규 마련 여부 (5점, 절대평가)	<p>[지표] 가상계좌 개설 또는 부여에 대한 고객확인 절차의 적정성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계좌: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의 입금 및 출금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고객에게 부여하는 입금확인번호 가상계좌는 은행에서 기업에게 부여한 무통장입금융 계좌와 달리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부여함 은행은 가상계좌 중 모계좌를 개설 시, 모계좌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거나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완료 했던 고객에게 개설해야 함 금융기관 및 DNFBP는 가상계좌를 고객에게 부여 시, 해당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거나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완료 했던 고객에게 개설해야 함 금융기관 및 DNFBP는 가상계좌를 개설하거나 고객에게 부여할 때 가상계좌 중 모계좌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고객확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내규를 수립해야 함 <p>※ 가상계좌는 사용 고객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상계좌 개설시 자금세탁에 활용되지 않도록 모계좌 개설 고객에 대한 철저한 위험평가를 수행해야하며, 무통장입금융 계좌가 불법 금융거래나 자금세탁에 활용되지 않도록 내규에 명시</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가상계좌 중 모계좌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은행이 고객에게 가상계좌(모계좌)를 개설 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방법과 절차 정의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 여부</p> <p>① 있음(5점)</p> <p>② 없음(0점)</p> <p>※ 해당없음 (가상계좌 발급서 비스 없음)</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산출식] 내규에 가상계좌 개설/부여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방법 및 절차 수립 여부</p>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내규마련	(O.11.01.13) 외국환거래 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5점, 절대평가)	<p>[지표] 외국환거래 요청은행 및 외국환거래은행에 대한 고객확인 절차의 고객확인 의무 방법 및 절차 수립 여부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환거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가 높은 상품/서비스에 해당함 2. 외국환거래계약이란 은행(환거래은행)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환거래서비스)를 국외의 은행(환거래요청은행)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관계를 수립 하는 것임 3.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행 또는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또는 국가에 설립된 은행(위장 은행)이 환거래요청은행의 환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환거래은행은 입수 가능하거나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환거래요청은행의 평판, 자금세탁/테러 자금조달과 관련된 조사 또는 규제대상 여부 등의 감독수준 평가해야 함 5. 환거래요청은행이 대리지불계좌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자신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해야 함 6. 환거래요청은행은 환거래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신원확인 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해야 함 7. 환거래은행은 새로운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임원 등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함 8. 환거래은행은 환거래요청은행이 고객확인 의무 수행한 것에 대해 완전성과 정확성을 재확인 하여 고객확인 의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p>[산정 기준/범위]</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 여부</p> <p>① 있음(5점) ② 없음(0점)</p> <p>※ 해당없음 (외국환거래서비스 없음)</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2. 고객확인 의무 방법 및 절차에 포함될 내용</p> <p>가. 외국환거래 대상거래 정의(환거래: Depo, Non-Depo 포함)</p> <p>나. 환거래 요청은행, 환거래 은행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절차 및 관련 문서 정의</p> <p>다. 환거래에 대한 고위경영진 승인절차 등</p> <p>[산출식] 내규 중 환거래 요청은행 및 환거래 은행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방법 및 절차 수립 여부</p>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내규마련	(O.11.01.14) 종합자산관리 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5점, 절대평가)	<p>[지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방법 및 절차 수립 여부 평가</p> <p>[설명]</p> <p>1.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해당함</p> <p>2. 금융기관 및 DNFBP로부터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금융기관 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p> <p>3. 해당 고객에 대해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의 상위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2.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금융기관 및 DNFBP가 제공하는 투자 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여부</p> <p>① 있음(5점)</p> <p>② 없음(0점)</p> <p>※ 해당없음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없음)</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산출식]</p> <p>1.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관리대상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방법 및 절차 수립 여부 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방법 및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인정</p> <p>①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대상자 추출 주기: 최소 분기 1회 이상 실시, 추출 룰 운영</p> <p>②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대상자 변동 시 승인절차 마련:예) 본부장 이상 승인</p> <p>③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EDD 반영</p>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내규마련	(O.11.01.15) 고위험국가 고객확인 내규 마련 여부 (5점, 절대평가)	<p>[지표] 고위험 국가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방법 및 절차 수립 여부 평가</p> <p>[설명]</p> <p>1. 금융기관 및 DNFBP는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함</p> <p>2.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가. FATF가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나. FATF Statement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다. 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라.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p> <p>3. 고위험국가의 국적자인지, 해당 지역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객인지 확인해야 함</p> <p>4.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고위험국가 관련자로 확인된 때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함</p> <p>5. 지속적으로 고위험국가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고위험국가 관련자인 경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여부</p> <p>①있음(5점)</p> <p>②없음(0점)</p> <p>※ 해당없음 (외국인 거래불가)</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6. 고위험국가 확인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수행되면 고위험 고객을 식별하지 못하여 필요한 통제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 기관 및 DNFBP에 대한 신뢰성 악화로 제재를 받게 됨</p> <p>[산정 기준/범위]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산출식]고위험 국가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방법 및 절차 수립 여부</p>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내규마련	(O.11.01.16) 거래처 AML/CFT 내규 마련 여부 (5점, 절대평가)	<p>[지표] 금융회사 및 DNFBP와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모니터링 적정성 평가</p> <p>[설명] 금융회사 및 DNFBP와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해 전제범죄와 관련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거래처: 금융거래 관련 제3자/아웃소싱, 물품을 납품하는 벤더사 등 3. 내규내용 : 거래처가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결되어 횡령 등 자금세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화 4. 금융지주사는 지주사와 거래하는 회사의 종류, 규모, 거래금액 등에 대해 특정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해야 함 <p>[산출식] 금융회사 및 DNFBP와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해 전제범죄와 관련하여 위반여부 모니터링 절차를 내규화</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여부 ①있음(5점) ②없음(0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내규마련	(O.11.01.17) AML/CFT 내규 마련 여부 (20점, 절대평가)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p>[지표] 전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절차의 적정성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 등은 전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빠짐없이 확인·평가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하여 확인된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이해 대응하는 위험기반접근법(위험이 높은 곳에 자원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적용해야 함 금융회사 등의 AML/CFT 체계 전반에 걸쳐 정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FATF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위험평가를 수행해야 함 <p>* (위험기반접근법) 전사 위험평가결과 위험이 높은 곳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위험이 낮은 곳은 간소화된 대책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 위험으로 확인된 경우, AML/CFT 체계가 해당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함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서비스, 고객, 채널 등의 측면에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 분석 및 평가 내부통제 활동과 관련된 운영위험을 빠짐없이 식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고위험 직종 고객 수 등 고유위험에 대해서도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규정 마련 자체 AML/CFT 취약점 분석을 통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개선절차 마련 규정화 지속적인 위험평가 절차 마련 위험평가 조직 구성(AML부서, 현업부서, 리스크관리팀, IT팀 등을 포함한 위험평가 조직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구분 (산정 기준 / 범위 2. 가~자 반영여부 확인)</p> <p>①전부있음(20점) ②7/9있음(15점) ③5/9있음(10점) ④3/9있음(8점) ⑤1/9있음(5점) ⑥없음(0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구성)</p> <p>사. 위험평가 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p> <p>아. 신문이나 언론 등 외부정보 수집, 활용방법 및 절차 마련</p> <p>자. 금융사고에 대한 자금세탁리스크 평가, 분석, 완화 조치를 이행하기위한 절차 마련 등</p> <p>[산출식] 내규 중 전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위험 식별, 분석 및 평가, 이행계획 수립, 위험평가 조직 구성 등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여부</p> <p>[입력항목] 내규 수준(구분-해당번호입력)</p>	
내규마련	(O.11.01.18) 신상품 AML/CFT 내규 마련 여부 (5점, 절대평가)	<p>[지표] 신규 상품/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검토 절차</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 및 DNFBP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함 2. 신상품/서비스의 출시 등에 따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함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신상품/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및 처리방안 나. 상품/서비스가 판매될 채널 및 업무환경에 대한 위험평가 및 처리방안 다. 상품/서비스의 판매절차에 대한 위험평가 및 처리방안 라. 상품/서비스 처리할 IT시스템에 대한 위험평가 및 처리방안 등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여부</p> <p>① 있음(5점)</p> <p>② 없음(0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산출식] 신규 상품/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검토 절차 마련 여부</p>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내규마련	<p>(O.11.01.19) 신상품 AML/CFT 전담부서 승인 (5점, 절대평가)</p>	<p>[지표]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검토 관련 전담부서의 최종 승인절차</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AML/CFT 전담부서의 위험평가와 승인절차 마련 여부, 신상품/서비스 출시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어야 함 2. 금융회사 등은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함 3. 신상품/서비스의 출시에 따라 예상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유형 및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함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의 최종 승인절차 마련 여부 <p>[산출식]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검토 관련 전담부서의 최종 승인절차 마련 여부</p>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여부</p> <p>① 있음(5점)</p> <p>② 없음(0점)</p>
내규마련	<p>(O.11.01.20) STR를 지침 마련 여부 (10점, 절대평가)</p>	<p>[지표] STR를 별 관리기준 정의</p> <p>[설명] STR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관리지침 마련여부를 평가</p>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2. STR를 운영서</p> <p>가. 틀이란 금융회사등에서 발생한 금융거래 중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 검출요건을 사전에 전산 시스템 또는 서면 등으로 정해둔 것을 의미</p> <p>나. STR를 별도로 검색조건이나 임계치를 설정하여 해당 범위에 검색된 거래는 검토를 통해 STR로 보고하고, 어떤 범위에 속하는 거래는 지점(영업점) 확인을 거치는 등의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p> <p>다. 수작업으로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수작업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절차 등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p> <p>[산출식] STR 룰별 세부 운영기준 마련 여부</p>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p><input type="checkbox"/> 여부</p> <p>① 있음(10점)</p> <p>② 없음(0점)</p>
내규마련	(O.11.01.21) 전사위험평가 STR를 반영 여부 (5점, 절대평가)	<p>[지표] STR룰</p> <p>[설명] STR룰 별도 전사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2. 전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을 STR 룰 개선에 활용해야 함</p> <p>3. 수작업으로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수작업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절차 등에 대해 반영 여부</p> <p>[산출식] 전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룰별 반영기준 마련 여부</p> <p>[입력항목] 내규 수준(여부-해당번호입력)</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 여부</p> <p>① 있음(5점)</p> <p>② 없음(0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전담조직	(O.11.02.01)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 규모 (40점, 절대평가)	<p>[지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 규모 평가 *전담인력: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정의</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AML/CFT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 2. 본점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평가(본점의 AML 전담인력 비율을 계산) 3.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나. 고객신원확인 이행 다. AML/CFT를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 및 평가에 대한 역할과 책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규정,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2) 직무기술서 및 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역할과 책임 명시, 보고 체계 명시 3)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4)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의 보존책임 7) 자금세탁방지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8)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활동 운영 9) 전사위험평가 및 통제 효과성 평가, 개선사항 경영층 보고 10) 전담직원 배치 11) 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 	<p>금융회사작성</p> <p>□범위평가(구간비율) <구간 비율평가> *본점 10인 이하 : 평가제외 *본점 50인 이하 : 5%이상 만점 *본점 100인 이하 : 3%이상 만점 *본점 200인 이하 : 2.5%이상 만점 *본점 500인 이하 : 2%이상 만점 *본점 1,000인 이하 : 1.5%이상 만점 *본점 1,001인 이상 : 1%이상 만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환거래 등 추가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p> <p>2)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 보고체계 운영, 금융정보분석원 추가 요구자료 제공</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2. 본점 직원수 대비 본점의 AML/CFT 전담인력(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 전담직원 포함) 비율</p> <p>3. 임직원: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임직원현황"에서 작성 시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p> <p>4. FIU에서 비율 계산 시 겸업의 경우 0.3명으로 처리(금융회사는 인원수 그대로 입력)</p> <p>5. 금융업과 타업(제조 등)을 겸영하는 경우, '총 임직원 수'는 금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p> <p>6. 본점 총 직원수에 따라 구간 비율을 달리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611 807 1765 906"> <tr> <td>본사 직원수(인)</td> <td>10이하</td> <td>11 ~ 50</td> <td>51 ~ 100</td> <td>101 ~ 200</td> <td>201 ~ 500</td> <td>501 ~ 1,000</td> <td>1,001이상</td> </tr> <tr> <td>만점기준</td> <td>평가제외</td> <td>5% 이상</td> <td>3% 이상</td> <td>2.5% 이상</td> <td>2% 이상</td> <td>1.5% 이상</td> <td>1% 이상</td> </tr> </table> <p>* 각 지표의 만점기준에 맞추어 절대평가</p> <p>7.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전담과 겸임을 구분</p> <p>[산출식] 본점의 AML/CFT 전담인력 비율 = (본점의 AML/CFT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수) ÷ (본점 직원 수) × 100</p> <p>[입력항목] 1) 본점 총직원수, 2) 본점 전담인력수, 3) 본점 겸업인력수 (FIU에서 비율계산)</p>	본사 직원수(인)	10이하	11 ~ 50	51 ~ 100	101 ~ 200	201 ~ 500	501 ~ 1,000	1,001이상	만점기준	평가제외	5% 이상	3% 이상	2.5% 이상	2% 이상	1.5% 이상	1% 이상	
본사 직원수(인)	10이하	11 ~ 50	51 ~ 100	101 ~ 200	201 ~ 500	501 ~ 1,000	1,001이상												
만점기준	평가제외	5% 이상	3% 이상	2.5% 이상	2% 이상	1.5% 이상	1% 이상												
전담조직	(O.11.02.02) 전담인력 업무연속성 (15점, 상대평가)	<p>[지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업무연속성을 평가</p> <p>*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전담인력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지속성·연속성을 평가</p>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설명] 자금세탁방지 인력 중 동 업무를 3년이상(겸임 6년이상) 수행한 직원의 비율을 측정</p> <p>[산정 기준/범위]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 규모(O.11.02.01)에 따른 전담/겸업 직원만 평가 3. 동 업무를 일정기간(전담 3년, 겸업 6년)이상 수행한 직원만 인정 4. 동 분야 업무경력이라면 타 회사의 근무기간도 인정(증빙 필요) - 고객확인, 거래 모니터링과 같이 세부 업무가 같은 경우만 계속성 인정 5. 본점의 전담인력만 평가</p> <p>[산출식] 본점의 AML/CFT 전담인력 장기근무 비율 = {(3년 이상 근무한 전담인력 수) + (6년 이상 근무한 겸업인력 수)} ÷ (자금세탁방지 인력 수)</p> <p>[입력항목] 1) 본점 자금세탁방지 전담 및 겸업 인력수(전담+겸업), 2) 3년 이상 전담인력 수, 3) 6년 이상 겸업인력 수 (FIU에서 비율계산) ※ 1번 항목은 전담인력규모(O.11.02.01)지표의 2번, 3번 항목의 합과 같아야 함</p>	
전담조직	(O.11.02.03) 고객확인 전담인력 규모 (15점, 절대평가)	<p>[지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한 전담인력의 규모</p> <p>[설명] 고객확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적정성 측정</p> <p>[산정 기준/범위]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고객확인(CDD) 업무: 고객확인 기준수립, 고객확인 수행, 고객확인 수행내역 점검, Watch</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범위평가(구간비율) <구간 비율평가> *본점 10인 이하 :</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List 관리, PEP(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관리, 신문이나 언론 등 자금세탁 관련자 검색</p> <p>3. 고객확인 업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업무분장표 또는 직무기술서에 정의해야 함</p> <p>4. 겸임인 경우 0.3 인정함</p> <p>5. 담당업무가 거래 모니터링 업무, CTR 업무인 전담인력은 제외함</p> <p>6. 본점에 한정하여 평가,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 규모와 중복 가능</p> <p>6. 본점 총 직원수에 따라 구간 비율을 달리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611 523 1765 624"> <tr> <td>본사 직원수(인)</td> <td>10이하</td> <td>11 ~ 50</td> <td>51 ~ 100</td> <td>101 ~ 200</td> <td>201 ~ 500</td> <td>501 ~ 1,000</td> <td>1,001이상</td> </tr> <tr> <td>만점기준</td> <td>평가제외</td> <td>4% 이상</td> <td>3% 이상</td> <td>2% 이상</td> <td>1.5% 이상</td> <td>1% 이상</td> <td>0.7% 이상</td> </tr> </table> <p>* 각 지표의 만점기준에 맞추어 절대평가</p> <p>8.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전담과 겸임을 구분</p> <p>[지표부가설명]</p> <p>1. 고객확인업무 전담인력 수</p> <p>가. CDD 업무(CDD 기준수립, CDD 수행인력, CDD 검증 인력, Watch List 관리인력, PEP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관리인력 등) 전담인력</p> <p>나. 신문이나 언론 등 자금세탁 관련자 검색 전담인력</p> <p>다. 담당업무가 "거래 모니터링 업무, CTR 업무 등" 타 AML 업무 전담자 제외</p> <p>라. 겸임인 경우 0.3인정</p> <p>마. 지점의 고객확인업무 인력 제외</p> <p>2. 직원중복 등록 불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 주요 업무로 담당업무 표기</p> <p>3. 금융업과 타업(제조 등)을 겸영하는 경우, 금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p> <p>4. 본점의 전담인력만 평가</p> <p>[산출식] 본점에서 고객확인업무 전담인력 비율 = (본점의 고객확인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수)</p>	본사 직원수(인)	10이하	11 ~ 50	51 ~ 100	101 ~ 200	201 ~ 500	501 ~ 1,000	1,001이상	만점기준	평가제외	4% 이상	3% 이상	2% 이상	1.5% 이상	1% 이상	0.7% 이상	<p>평가제외</p> <p>*본점 50인 이하 : 4%이상 만점</p> <p>*본점 100인 이하 : 3%이상 만점</p> <p>*본점 200인 이하 : 2%이상 만점</p> <p>*본점 500인 이하 : 1.5%이상 만점</p> <p>*본점 1,000인 이하 : 1%이상 만점</p> <p>*본점 1,001인 이상 : 0.7%이상 만점</p>
본사 직원수(인)	10이하	11 ~ 50	51 ~ 100	101 ~ 200	201 ~ 500	501 ~ 1,000	1,001이상												
만점기준	평가제외	4% 이상	3% 이상	2% 이상	1.5% 이상	1% 이상	0.7% 이상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div (\text{본점 직원 수}) \times 100$ [입력항목] 1) 본점 총직원수, 2) 본점 고객확인 전담인력수, 3) 본점 고객확인 겸업인력수 (FIU에서 비율계산)	
전담조직	(O.11.02.04) AML/CFT 책임자 직급 (10점, 절대평가)	<p>[지표] 전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위한 위험관리 조직의 책임자 직급을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ML/CFT 위험관리조직의 책임자의 직급 수준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회사내에서의 권한의 크기와 AML/CFT 운영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수준 및 위험 경감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음 2. 금융회사 등은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3.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 평가, 완화해야 함 4.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에 따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하며, 조치는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해야 함 <p>* (위험기반접근법) 고 위험에 대해서는 자원을 집중해서 대응조치하고 저 위험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대책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AML/CFT 체제 전반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이행해야 함 6. 보다 높은 위험이 확인된 경우, AML/CFT 체제가 해당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p>[산정 기준/범위]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산출식] AML/CFT 관리조직의 책임자로 임명된 직급</p> <p>[입력항목] 책임자 직급(구분-해당번호입력)</p>	금융회사작성 <input type="checkbox"/> 구분 ①대표이사(10점) ②부사장, 부행장 이상(7점) ③임원(전무·상무·이사)이상(5점) ④부서장 이상(2점) ⑤조직없음(0점)
전담조직	(O.11.02.05)	[지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승인자의 수준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내규수립/업무수행 승인자 수준 (10점, 절대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 평가, 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상응한 조치를 마련해야함 * 위험기반접근법 : 위험이 높은 곳에 자원을 집중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저 위험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대책 마련 FATF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위험 수준에 맞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완화 조치를 이행해야함 고위험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위험에 맞게 적절한 대응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p>[산정 기준/범위]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산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 조치계획에 대해 승인을 하는 경영진의 직급 수준 대표이사 : 조합 및 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p>[입력항목] 승인자 직급(구분-해당번호입력)</p>	<p>□구분</p> <p>①대표이사(10점) ②부사장, 부행장 이상(7점) ③임원(상무·전무·이사)이상(5점) ④부서장 이하(2점)</p>
<p>전담조직</p>	<p>(O.11.02.06) 보고책임자 직급수준 (10점, 절대평가)</p>	<p>[지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직급 수준 평가</p> <p>[설명]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보고책임자의 직급을 통해 금융회사(DNFBP) 내에서의 보고책임자 권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중요성,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평가</p>	<p>금융회사작성</p> <p>□구분</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보고책임자의 직급 3. 직급 체계/명칭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직급구분 중 택1 <p>[산출식] 보고책임자의 직급</p> <p>[산출식] 보고책임자의 직급</p> <p>[입력항목] 보고책임자 직급(구분-해당번호입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임원급 이상(10점) ②부서장 이상(7점) ③팀장/관리자 이상(4점) ④팀장/관리자 미만(0점)
<p>전담조직</p>	<p>(O.11.02.07) 보고책임자 역할과 책임 평가 (10점, 절대평가)</p>	<p>[지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범위를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나. 고객신원확인과 관련된 업무 총괄 다.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 및 평가에 대한 총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규정,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2) 직무기술서, 규정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보고체계 구축 3)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4)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구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전부있음(10점) ②3/4있음(7점) ③2/4있음(5점) ④1/4있음(2점) ⑤없음(0점)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7) 자금세탁방지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8)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활동 운영 9) 전사위험평가 및 통제 효과성 평가, 개선사항 경영층 보고</p> <p>라.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p> <p>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환거래 등 추가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 2)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 보고체계 운영, 금융정보분석원 추가 요구자료 제공</p> <p>[산정 기준/범위]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내규/지침에 정의되어 있는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의 규모</p> <p>[산출식]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의 규모 = (내규/지침에 일부 정의된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 (법령상의 전체 역할 및 책임)</p> <p>[입력항목] 보고책임자 역할(구분-해당번호입력)</p>	

2. 내부통제 운영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이사회·경영진 보고</p>	<p>(O.12.01.01) 이사회 보고 실적 (10점, 절대평가)</p>	<p>[지표]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이사회 보고실적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DNFBP)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 금융회사(DNFBP)의 경영진은 자금세탁방지 주요활동, 자금세탁 전사 위험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자금세탁방지 활동 등 관련 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실적 대표이사(조합 및 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준법지원부, 감사위원회 등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실적 대상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와 유사한 협의회 인정(예: 외은 지점 및 외국계 증권사 지점 등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 <p>[산출식]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 관련 이사회 보고하여 결재 받은 횟수</p> <p>[입력항목] 이사회 보고 후 결재 받은 건수(횟수)</p>	<p>금융회사작성</p> <p>□구분</p> <p>*횟수>=4(10점) *횟수>=3(8점) *횟수>=2(6점) *횟수>=1(4점) *횟수<1(0점)</p>
<p>이사회·경영진 보고</p>	<p>(O.12.01.02) 최고경영자 보고 실적 (20점, 절대평가)</p>	<p>[지표]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 실적 평가</p> <p>[설명]</p> <p>금융회사(DNFBP)의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활동의 변경, 전사위험평가 결과 및</p>	<p>금융회사작성</p>

분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고
		<p>개선조치, 통제 효과성평가(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잘 수행되는지 현업 점검) 결과 등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자금세탁방지 활동 관련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결재 받은 실적 3. 보고책임자: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6조의 AML/CFT 제도 운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함 4. 경영자: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5조의 AML/CFT 제도 운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함 5. 외은 지점 및 외국계 증권사 지점 등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의 경우 지점장이 해당 6. 조합 및 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 조합장 또는 대표이사 등이 해당 7. 각 금융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총 책임자로 금융회사 대표에 해당 <p>[산출식]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 건수</p> <p>[입력항목]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 건수(횟수)</p>	<p>□구분</p> <p>*횟수>=6(20점)</p> <p>*횟수>=4(12점)</p> <p>*횟수>=3(9점)</p> <p>*횟수>=2(6점)</p> <p>*횟수<2(0%)</p> <p>▪ 배점의 비율</p>
교육	(O.12.02.01) 이사회 교육 실적 (10점, 절대평가)	<p>[지표] 이사회 자금세탁방지 교육 이수 실적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부여받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는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2. 권고시간 이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이수한 이사의 비율 <p>[산정 기준/범위]</p>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2. 이사회 구성원: 상주/비상주, 사내/사외 이사 포함 *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예: 외은 지점 및 외국계 증권사 지점 등)인 경우에는 이사회와 유사한 지점 협의회의 구성원</p> <p>3. 이사회 교육 권고시간 : 1인당 최소 6시간</p> <p>4. 전달교육 미인정 : 메일 등으로 교육자료만 발송하는 것은 교육실적으로 미포함</p> <p>5. 교육실적 인정비율 :</p> <p>가. “교육실적 시간”은 “교육시간 × 교육실적 인정비율”로 산정</p> <p>나. 집합교육은 120%인정, 사이버 교육은 100%인정</p> <p>다. (예정, '24년 이후 실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해도 점검 교육”의 경우, 집합교육은 150%, 사이버교육은 120%인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이해도 점검 교육 요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항수 : 교육시간 당 3개 문항 이상(총 10시간 이상인 경우, 30개 이상) 2) 난이도 :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에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 3) 수료기준 : 전체 배점 대비 60% 이상 득점시에만 수료 4) 응시횟수 : 1회, 다만 문제·보기가 다르게 구성된 경우 재응시 허용 5) 공유제한 : 사이버교육의 경우 응시자별로 문제·보기를 상이하하게 구성 </div> <p>* 교육인정 예1) 이해도 점검이 없는 5시간(300분) 집합교육 시 6시간(360분) 인정 예2) 이해도 점검이 있는 5시간(300분) 집합교육 시 7.5시간(450분) 인정</p> <p>6.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으로 아래 증빙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교육실적으로 인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교육증빙시 필수 기록·보존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명·교육과정제작기관 (예: 자체제작, 금융연수원 등) 2) 강사명·강사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약력에는 5개 전문자격증 보유여부 등 AML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 AML 전문성을 보유한 교·강사가 실시한 교육 이수 권고 </div>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3) 수강증빙자료 (수강생 서명, 수강확인증 등 수강 증빙 필요)</p> <p>4) 교육일시 (예, '23.4.3(월) 14:00~16:00 2시간)</p> <p>5) 교육장소 (예, 강의실 호수 등 세부주소까지 기록·보존)</p> <p>6) 교육형태</p> <p>- 집합·사이버(Zoom 등 실시간 스트리밍 포함) 중 택일</p> <p>7) 교육목적</p> <p>8) 교육자료</p> <p>- 교육에 활용된 일체의 전자·비전자 문서</p> <p>9) (예정, '24년 이후 실적) 기타자료</p> <p>- '자체교육'과 '이해도 점검 교육'의 경우 각 요건 충족여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p> <p>[산출식] 권고시간 이상 AML 교육을 이수한 이수자 비율 = (권고시간 이상 AML 교육을 이수한 이사회 구성원 수) ÷ (이사회 구성원 총 인원수)</p> <p>[입력항목] 1) 이사회 총 인원수, 2) 권고시간 이상 AML 교육을 이수한 이사 인원수</p>	
교육	(O.12.02.02) 경영진 교육 실적 (10점, 절대평가)	<p>[지표] 자금세탁방지관련 경영진 교육이수 실적 평가</p> <p>[설명]</p> <p>1.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관련하여 부여받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진은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p> <p>2. 권고시간 이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이수한 경영진의 비율</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2. 경영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5조의 AML/CFT 제도 운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함</p>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 외은 지점 및 외국계 증권사 지점 등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의 경우 지점장이 경영진에 해당함</p> <p>3. 경영진 교육 권고시간 : 1인당 최소 6시간</p> <p>4. 전달교육 미인정 : 메일 등으로 교육자료만 발송하는 것은 교육실적으로 미포함</p> <p>5. 교육실적 인정비율 :</p> <p>가. “교육실적 시간”은 “교육시간 × 교육실적 인정비율”로 산정</p> <p>나. 집합교육은 120%인정, 사이버 교육은 100%인정</p> <p>다. (예정, '24년 이후 실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해도 점검 교육”의 경우, 집합교육은 150%, 사이버교육은 120%인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이해도 점검 교육 요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항수 : 교육시간 당 3개 문항 이상(총 10시간 이상인 경우, 30개 이상) 2) 난이도 :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에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 3) 수료기준 : 전체 배점 대비 60% 이상 득점시에만 수료 4) 응시횟수 : 1회, 다만 문제·보기가 다르게 구성된 경우 재응시 허용 5) 공유제한 : 사이버교육의 경우 응시자별로 문제·보기를 상이하게 구성 </div> <p>* 교육인정 예1) 이해도 점검이 없는 5시간(300분) 집합교육 시 6시간(360분) 인정 예2) 이해도 점검이 있는 5시간(300분) 집합교육 시 7.5시간(450분) 인정</p> <p>6.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으로 아래 증빙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교육실적으로 인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교육증빙시 필수 기록·보존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명·교육과정제작기관 (예: 자체제작, 금융연수원 등) 2) 강사명·강사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약력에는 5개 전문자격증 보유여부 등 AML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 AML 전문성을 보유한 교·강사가 실시한 교육 이수 권고 3) 수강증빙자료 (수강생 서명, 수강확인증 등 수강 증빙 필요) 4) 교육일시 (예, '23.4.3(월) 14:00~16:00 2시간) 5) 교육장소 (예, 강의실 호수 등 세부주소까지 기록·보존) </div>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div data-bbox="568 245 1823 53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6) 교육형태 - 집합·사이버(줌 등 실시간 스트리밍 포함) 중 택일</p> <p>7) 교육목적</p> <p>8) 교육자료 - 교육에 활용된 일체의 전자·비전자 문서</p> <p>9) (예정, '24년 이후 실적) 기타자료 - '자체교육'과 '이해도 점검 교육'의 경우 각 요건 충족여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p> </div> <p>[지표부가설명]</p> <p>1.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정의)</p> <p>가.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p> <p>나.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p> <p>다.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참고) 경영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p> <p>가. 은행은 지점장 또는 부서장 등을 제외한 상위직급자를 말함</p> <p>나. 보험은 본부장 또는 지역단장 등을 포함한 상위직급자를 말함</p> <p>다. 증권사, 외국계증권사, 선물사는 지점장 또는 부서장 등을 제외한 상위직급자를 말함</p> <p>라. 조합 및 금고는 지점장, 부서장을 제외한 상위직급자를 말함</p> <p>3. 권고시간 이상 자금세탁방지교육 이수율</p> <p>가. 전체 경영진 중 AML 교육을 권고시간 이상 이수한 경영진의 비율</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산출식] 권고시간 이상 AML 교육 이수자 비율 = (권고시간 이상 AML 교육을 이수한 경영진 수) ÷ (경영진 총 인원수)</p> <p>[입력항목] 1) 경영진 총 인원수, 2) 권고시간 이상 AML 교육을 이수한 경영진 인원수</p>	
교육	(O.12.02.03) 직원 교육 실적 (48점, 절대평가)	<p>[지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직원 교육·연수 실적</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의 직원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연수를 이수해야 함 2. 교육 권고시간 총량(직원수 × 6시간)을 직원별 교육권고시간으로 자율적 배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사회·경영진의 교육권고시간은 6시간을 유지, 직원 수 산정시 제외 나. 직원당 최소 2시간 ~ 최대 48시간 범위내에서 자율적 배분 다. 직원별 교육권고시간은 매년 1분기내에 <u>이사회 또는 경영진 승인</u>하에 결정 3. 교육 권고시간 총량 대비 교육권고시간 이상 이수한 직원의 교육권고시간 총합을 계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육실적 시간이 교육권고시간 미만인 직원의 교육실적 시간은 미포함 나. 교육실적 시간이 교육권고시간을 초과하는 직원의 초과 교육실적 시간은 미포함 예시) 직원 3명의 권고시간이 각각 2시간, 6시간, 10시간이고 실제 교육실적 시간이 각각 2시간, 4시간, 12시간인 경우 → 총 18시간 중 12(2+0+10)시간을 이수한 것 인정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직원수 산정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평가기간 중 근무한 전체 직원 나. 경영진 및 이사회 교육실적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 다. 직원 인력 수 산정 시 휴직자는 제외 가능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 일부기간만 근무한 경우 근무한 기간에 따라 권고시간 비율을 적용 라. 금융업과 타업(제조 등)을 겸영하는 경우, '전체 임직원 수'는 금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p> <p>3. <u>교육권고시간</u> : 평균 6시간이 되도록 직원별 교육권고시간을 자체 배분 가. 직원별 업무의 난이도·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 배분</p> <p>< AML 교육 권고시간 (AML 교육정책방향, 보도자료 참고) ></p> <table border="1" data-bbox="566 475 1809 667"> <thead> <tr> <th>구분</th> <th>' 23년 권고시간</th> <th>' 24년 권고시간</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직원</td> <td>6시간</td> <td rowspan="2">회사별 평균 6시간 자체배분 (직원당 최소 2시간 ~ 최대 48시간)</td> </tr> <tr> <td>AML 관련 직원 (전담·겸임직원, 감사직원)</td> <td>12시간</td> </tr> </tbody> </table> <p>* 자체배분 기한 : 매년 1분기 내 계획 수립, 미수립시 직원당 권고시간은 일괄 6시간으로 결정 예시) '23년 12월말 기준 : 6시간, '24년 6월말 기준 : 3시간 + '24년 자체 권고시간의 50%</p> <p>4. 전달교육 미인정 : 메일 등으로 교육자료만 발송하는 것은 교육실적으로 미포함</p> <p>5. 교육실적 인정비율 : 가. "교육실적 시간"은 "교육시간 × 교육실적 인정비율"로 산정 나. 집합교육은 120%인정, 사이버 교육은 100%인정 다. (예정, '24년 이후 실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해도 점검 교육"의 경우, 집합교육은 150%, 사이버교육은 120%인정</p> <div data-bbox="638 1070 1753 132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이해도 점검 교육 요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항수 : 교육시간 당 3개 문항 이상(총 10시간 이상인 경우, 30개 이상) 2) 난이도 :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에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 3) 수료기준 : 전체 배점 대비 60% 이상 득점시에만 수료 4) 응시횟수 : 1회, 다만 문제·보기가 다르게 구성된 경우 재응시 허용 5) 공유제한 : 사이버교육의 경우 응시자별로 문제·보기를 상이하게 구성 </div> <p>* 교육인정 예1) 이해도 점검이 없는 5시간(300분) 집합교육 시 6시간(360분) 인정 예2) 이해도 점검이 있는 5시간(300분) 집합교육 시 7.5시간(450분) 인정</p>	구분	' 23년 권고시간	' 24년 권고시간	일반 직원	6시간	회사별 평균 6시간 자체배분 (직원당 최소 2시간 ~ 최대 48시간)	AML 관련 직원 (전담·겸임직원, 감사직원)	12시간	
구분	' 23년 권고시간	' 24년 권고시간									
일반 직원	6시간	회사별 평균 6시간 자체배분 (직원당 최소 2시간 ~ 최대 48시간)									
AML 관련 직원 (전담·겸임직원, 감사직원)	12시간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6. (예정, '24년 이후 실적) 직원 교육 시 최소 10% 이상은 <u>자체교육</u>으로 실시 가. 자체교육(각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체계에 특화된 내부 교육)이 1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취득점수의 90%인정</p> <p>7. (예정, '24년 이후 실적) 직원 교육 시 최소 10% 이상은 <u>이해도 점검 교육</u>으로 실시 가. 이해도 점검 교육이 1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취득점수의 90%인정</p> <p>8.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으로 아래 증빙을 <u>모두</u> 갖춘 경우에만 교육실적으로 인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교육증빙시 필수 기록·보존사항(업무규정 §9 ②에 근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명·교육과정제작기관 (예: 자체제작, 금융연수원 등) 2) 강사명·강사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약력에는 5개 전문자격증 보유여부 등 AML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 AML 전문성을 보유한 교·강사가 실시한 교육 이수 권고 3) 수강증빙자료 (수강생 서명, 수강확인증 등 수강 증빙 필요) 4) 교육일시 (예, '23.4.3(월) 14:00~16:00 2시간) 5) 교육장소 (예) 강의실 호수 등 세부주소까지 기록·보존) 6) 교육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사이버(Zoom 등 실시간 스트리밍 포함) 중 택일 7) 교육목적 8) 교육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활용된 일체의 전자·비전자 문서 9) (예정, '24년 이후 실적) 기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교육'과 '이해도 점검 교육'의 경우 각 요건 충족여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div> <p>[산출식] 권고시간 이상 AML 교육 이수자 비율 = (권고시간 이상 AML 교육을 이수한 직원 수) ÷ (총 직원수) × 100</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입력항목] 1) 총 직원수, 2) 일반 직원 중 권고시간 이상 AML 교육 이수자 수, 3) AML 관련직원 중 권고시간 이상 AML 교육 이수자 수</p> <p>(예정, '24년 이후 실적)</p> <p>[산출식] 교육권고시간 총량대비 교육이수시간의 비율 = (권고시간 이상 이수한 직원의 교육권고시간 총 합) ÷ (교육권고시간 총량) × 자체교육 비중 준수 여부(1.0 또는 0.9) × 이해도 점검 교육 비중 준수 여부(1.0 또는 0.9)</p> <p>※ 전체교육실적 시간대비 자체교육실적 시간이 10% 미만인 경우 점수의 90%만 인정 ※ 전체교육실적 시간대비 이해도 점검 교육실적 시간이 10% 미만인 경우 점수의 90%만 인정</p>	
교육	(O.12.02.04) AML/CFT 전문가 양성 실적 (30점, 상대평가)	<p>[지표] AML/CFT 전문가 양성 실적</p> <p>[설명] 국내외 자격증 취득 및 전문교육을 통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경감시키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AML/CFT 전문가 자격증: CAMS, KCAMS, 금융연수원 자격(영업점 컴플라이언스오피서 등) 등 취득 점수 동일인이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최고 인정점수 1건만 산정하여 산출 예) 총 직원 100명 중 3명이 자금세탁방지 핵심(기초)을 취득하고, 그 중 1명은 CAMS 자격증도 있는 경우 → 총 직원수 100명, 전문가 자격점수 9.5 입력 (1인 1개 인정) 총 직원수 대비 자격증 취득 점수의 비율로 산정 금융업과 타업(제조 등)을 겸영하는 경우, '총 직원 수'는 금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금융회사작성

분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고																												
		<p>6. AML/CFT 전문가 자격 점수 분류</p> <table border="1" data-bbox="568 293 1798 552"> <thead> <tr> <th>번호</th> <th>자격명</th> <th>교육기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CAMS</td> <td>국제자금세탁방지협회</td> <td>3.5</td> </tr> <tr> <td>2</td> <td>KCAMS</td> <td>새금융사회연구소</td> <td>3.0</td> </tr> <tr> <td>3</td> <td>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전문)</td> <td>한국금융연수원</td> <td>3.5</td> </tr> <tr> <td>4</td> <td>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기초)</td> <td>한국금융연수원</td> <td>3.0</td> </tr> <tr> <td>5</td> <td>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td> <td>한국금융연수원</td> <td>3.0</td> </tr> <tr> <td>(예정)</td> <td>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d> <td>한국금융연수원</td> <td>미정</td> </tr> </tbody> </table> <p>7. AML 전담인력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인정</p> <p>가. 업무경력이 2년(겸업 4년) 이상인 경우 자격점수의 200%인정 나. 업무경력이 1년(겸업 2년) 이상인 경우 자격점수의 150%인정 다. 업무경력이 1년(겸업 미인정) 미만인 경우 자격점수의 120%인정</p> <p>※(참고) 전담인력 규모(O.11.02.01)지표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p> <p>[산출식] 총 직원수 대비 AML 전문가 양성의 비율 = (전문가 자격점수의 총합) ÷ (총 직원수)</p> <p>[입력항목] 1) 총 직원수, 2) 전문가 자격점수의 총합</p>	번호	자격명	교육기관	점수	1	CAMS	국제자금세탁방지협회	3.5	2	KCAMS	새금융사회연구소	3.0	3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전문)	한국금융연수원	3.5	4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기초)	한국금융연수원	3.0	5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한국금융연수원	3.0	(예정)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한국금융연수원	미정	
번호	자격명	교육기관	점수																												
1	CAMS	국제자금세탁방지협회	3.5																												
2	KCAMS	새금융사회연구소	3.0																												
3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전문)	한국금융연수원	3.5																												
4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기초)	한국금융연수원	3.0																												
5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한국금융연수원	3.0																												
(예정)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한국금융연수원	미정																												
교육	(O.12.02.05) AML/CFT 전문교육 실적 (2점, 절대평가)	<p>[지표] AML/CFT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한 실적</p> <p>[설명] 금융회사에서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AML 전문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평가기간 중 대학/금융전문대학의 AML/CFT 전문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인정</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여부</p> <p>①수강자 있음(2점) ②없음(0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3. AML/CFT 전문교육</p> <table border="1" data-bbox="584 288 1805 400"> <thead> <tr> <th>번호</th> <th>전문교육명</th> <th>교육기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성균관대학교 금융지도자(AML전문가) 과정</td> <td>성균관대학교</td> </tr> <tr> <td>2</td> <td>이화-매경 자금세탁방지전문가 과정</td> <td>이화여자대학교&매경</td> </tr> </tbody> </table> <p>[산출식] 평가기간 중 AML 전문교육을 수강 중인 직원이 있는지 여부</p> <p>[입력항목] 수강중 여부(여부-해당번호입력)</p>	번호	전문교육명	교육기관	1	성균관대학교 금융지도자(AML전문가) 과정	성균관대학교	2	이화-매경 자금세탁방지전문가 과정	이화여자대학교&매경	
번호	전문교육명	교육기관										
1	성균관대학교 금융지도자(AML전문가) 과정	성균관대학교										
2	이화-매경 자금세탁방지전문가 과정	이화여자대학교&매경										
<p>독립적 감사</p>	<p>(O.12.03.01) 지점 운영실태 점검 실적 (10점, 상대평가)</p>	<p>[지표]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에 관한 지점 점검 실적 평가</p> <p>[설명] 준법감시팀 또는 업무운영팀 등에서 AML/CFT 운영실태의 점검을 통해 AML/CFT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약점을 식별하여 개선하도록 함</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점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현장점검 시 CDD이행 등을 샘플링하여 검증을 수행한 경우에 한함 나. 단순 서면 또는 인터뷰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경우는 인정 안함 다. 원격점검을 통하여 CDD이행 등을 샘플링 점검을 충실히 수행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지점을 특정하여 원격점검 등을 수행한 경우에 한함 3. 점검대상 지점: 국내지점 및 해외지점/자회사 4. 중복 점검 제외: 산정 기준 기간 내에 한 지점에 대해 여러 차례 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도 1 지점으로 간주함 5. 지점이 없는 경우: 본점을 지점으로 간주함 6. 해외 지점/자회사 : 	<p>금융회사작성</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 연결지분 50%이상인 경우, 연결지분 50%미만이지만 최대주주인 경우, 해외자회사의 자회사 지점인 경우 점검 대상 전체지점 수에 포함함</p> <p>[산출식] AML운영실태 점검을 수행한 지점 비율 = (AML 운영실태 점검을 수행한 지점 수) ÷ (점검대상 전체 지점 수) × 100</p> <p>[입력항목] 1) 검사대상 전체 지점 수, 2) AML 운영실태 점검 지점 수</p>	
독립적 감사	(O.12.03.02) 지점 지적사항 개선 실적 (5점, 상대평가)	<p>[지표]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에 대한 지점 실태 점검 후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p> <p>[설명] 준법감시팀 또는 업무운영팀 등에서 수행한 지점별 AML/CFT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식별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취약점을 개선조치 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지적 건수: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여러 차례 도출된 경우 다수 건으로 계산함 3. 개선 건수: 지적사항 중 조치가 완료한 건에 한함 4. 점검대상 지점: 국내지점 및 해외지점/자회사 5. 지점이 없는 경우: 본점을 지점으로 간주 6. 해외 지점/자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지분 50%이상인 경우, 연결지분 50%미만이지만 최대주주인 경우, 해외자회사의 자회사 지점인 경우 점검 대상 전체지점 수에 포함함 <p>[산출식] AML/CFT 운영실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비율 = (조치완료 건수) ÷ (운영실태 점검시 도출된 지적사항 건수) × 100</p>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입력항목] 1) AML 운영실태 점검 시 도출된 지적사항 건수 전체 2)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 된 건수</p>	
<p>독립적 감사</p>	<p>(O.12.03.03) 독립적 감사 수행 실적 (15점, 상대평가)</p>	<p>[지표]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독립적 감사 수행 실적</p> <p>[설명] AML/CFT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u>독립된 부서</u>에서 AML/CFT 업무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전 1년간 2. 감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수준, 내부통제 절차를 제3자의 입장에서 샘플링하여 점검을 수행한 경우에 한함 나.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현장점검, 자료검증(CDD, CTR 등) 등을 활용 다. 단순 서면 또는 인터뷰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경우는 인정 안함 3. 감사대상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내지점 및 해외지점/자회사 나. 해외자회사가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회사 지점수를 포함 4. 지점이 없는 경우: 본점을 지점으로 간주함 5. 해외 지점/자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지분 50%이상인 경우, 연결지분 50%미만이지만 최대주주인 경우, 해외자회사의 자회사 지점인 경우 점검 대상 전체지점 수에 포함함 6. 한 부서에 대해서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반복해서 수행한 경우에는 중복을 제거하고 1로 산정함 	<p>금융회사작성</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7. 본점에도 영업부서가 있는 경우 감사대상에 포함하여 집계</p> <p>[산출식] 독립감사 부서 비율 = [(AML 관련 독립적 감사수행 총부서 수) ÷ (감사대상 총 부서 수)] * 100</p> <p>[입력항목] 1) 감사대상 총 부서수, 2) 감사수행 부서수</p>	
독립적 감사	<p>(O.12.03.04) 독립적 감사 지적사항 개선 실적 (5점, 상대평가)</p>	<p>[지표] AML/CFT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개선한 실적</p> <p>[설명] AML/CFT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u>독립된 부서</u>에서 AML/CFT 업무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전 1년간 2. 지적 건수: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여러차례 도출된 경우 다수 건으로 계산함 3. 개선 건수: 지적사항 중 조치가 완료한 건에 한함 4. 감사대상 부서: 국내지점 및 해외지점/자회사 5. 지점이 없는 경우: 본점을 지점으로 간주함 6. 해외 지점/자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지분 50%이상인 경우, 연결지분 50%미만이지만 최대주주인 경우, 해외자회사의 자회사 지점인 경우 점검 대상 전체지점 수에 포함함 7. 본점에도 영업부서가 있는 경우 감사대상에 포함하여 집계 <p>[산출식] 독립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비율 = [(조치완료 건수) ÷ (독립적 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건수)] × 100</p>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입력항목] 1) 독립적 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건수 전체 2)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 된 건수</p>																			
<p>독립적 감사</p>	<p>(O.12.03.05) 자금세탁방지 감사팀 전문성 수준 (15점, 상대평가)</p>	<p>[지표] 자금세탁방지 감사팀 직원 중 AML 전문가 보유 규모</p> <p>[설명] 자금세탁방지 감사(독립적 감사 수행)팀의 인력은 AML/CFT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AML 감사팀 인력 중 AML/CFT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직원 비율을 측정 동일인은 최고 인정점수(명수) 한 건만 산정하여 산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감사를 실시한 경우 전문성 수준을 입력하거나, “해당없음” 처리 가능 * 추후 외부전문가도 전문성 수준에 대해 평가할 예정(시기 미정) <p>[지표부가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ML/CFT 전문가 자격 분류 <table border="1" data-bbox="584 999 1742 1222"> <thead> <tr> <th>번호</th> <th>자격명</th> <th>교육기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CAMS</td> <td>국제자금세탁방지협회</td> </tr> <tr> <td>2</td> <td>KCAMS</td> <td>새금융사회연구소</td> </tr> <tr> <td>3</td> <td>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전문)</td> <td>한국금융연수원</td> </tr> <tr> <td>4</td> <td>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기초)</td> <td>한국금융연수원</td> </tr> <tr> <td>5</td> <td>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td> <td>한국금융연수원</td> </tr> </tbody> </table> 감사팀 총 직원 중 전문가 자격증 보유 직원 수 <p>[산출식]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비율 = [(전문가 자격증 보유 직원 수) ÷ (AML/CFT 감사팀 전체 인원 수)] × 100</p>	번호	자격명	교육기관	1	CAMS	국제자금세탁방지협회	2	KCAMS	새금융사회연구소	3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전문)	한국금융연수원	4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기초)	한국금융연수원	5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한국금융연수원	<p>금융회사작성</p> <p>※ 해당없음 (외부 독립적감사 실시)</p>
번호	자격명	교육기관																			
1	CAMS	국제자금세탁방지협회																			
2	KCAMS	새금융사회연구소																			
3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전문)	한국금융연수원																			
4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기초)	한국금융연수원																			
5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한국금융연수원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입력항목] 1) 자금세탁방지 감사팀 총 인원수, 2) 전문가 자격증 보유 직원 수(명수 기준에 따른 합)</p>	
징계 및 포상	(O.12.04.01) 금융회사 징계 실적 (5점, 절대평가)	<p>[지표]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린 제재조치(조치유형) 평가</p> <p>[설명] 고객확인 의무(CDD), 제재(Sanction), STR, CTR, 위협평가, 모니터링, DNFBP,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AML/CFT 업무에 대해 위반하거나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내려진 징계조치 실적을 평가</p> <p>[산정 기준/범위]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산정 기간 동안 받은 조치 내역 중 최고 수준의 징계를 선택 3. 징계 수위(내림차순): [수위 높은 조치] 영업정지 또는 일부 정지 > 위반행위 시정명령 > 기관경고 > 기관주의 4. 현지법인·지점 등에 대한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공식 제재·조치 포함</p> <p>[산출식] 징계 실적 중 최고 수준 수위</p>	<p>FIU제공</p> <p><input type="checkbox"/>구분</p> <p>① 영업정지 또는 일부정지(0점) ② 위반행위시정명령 (1점) ③ 기관경고(2점) ④ 기관주의(4점) ⑤ 없음(5점)</p>
징계 및 포상	(O.12.04.02) 임직원 외부 징계실적 (5점, 절대평가)	<p>[지표]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하여 감독 당국이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에 내린 징계실적 평가</p> <p>[설명]</p>	FIU제공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고객확인 의무(CDD), 제재(Sanction), STR, CTR, 위험평가, 모니터링, DNFBP,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AML/CFT 업무에 대해 위반하거나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음</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AML/CFT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DNFBP의 임직원이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인원 수 3. 징계조치(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직위: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나. 임원: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4. 현지법인·지점 등에 대한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공식 제재·조치 포함 <p>[산출식] 징계 받은 인원 수</p>	<p>□구분</p> <p>*명\geq2(0점)</p> <p>*명\geq1(3점)</p> <p>*명=0(5점)</p>
징계 및 포상	(O.12.04.03) 감독당국 과태료 부과 실적 (5점, 절대평가)	<p>[지표]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 당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부과 실적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제도요건 위반 시 해당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p>FIU제공</p> <p>□범위평가</p> <p>*과태료=0(5점)</p> <p>*과태료 1,000만원 미만 (4점)</p> <p>*과태료 1억 미만 (3점)</p> <p>*과태료 10억미만(2</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다. 고액현금거래를 하거나 고액현금거래를 피할 목적으로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p> <p>라. AML/CFT 제도운영의 실태평가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의 경우</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AML에 대한 국내외 감독당국의 벌금 등 금전적 제재 <p>[산출식] 과태료 금액</p>	<p>점)</p> <p>*과태료 10억이상(0점)</p>												
<p>징계 및 포상</p>	<p>(O.12.04.04) 임직원 대내외 포상 실적 (5점, 절대평가)</p>	<p>[지표]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대내외 업무포상 등 인센티브 실적 점수</p> <p>[설명]</p> <p>금융정보분석원은 매년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 우수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포상 실시, 금융회사들도 자체 임직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수여할 수 있음</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대내외 포상, 인센티브 실적 점수 3. 내부 자금세탁방지 업무 우수 직원 포상은 대표이사, 인사부, 준법감시인 등 회사 인사기록에 남는 공식적인 포상에 한함 4. 점수구분 표 <table border="1" data-bbox="568 1278 1839 1417"> <thead> <tr> <th>번호</th> <th>구분</th> <th>인정 포인트</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금융정보분석원(금융위원회) 포상</td> <td>4</td> </tr> <tr> <td>2</td> <td>기타 AML 관련 정부 혹은 공공기관 포상</td> <td>3</td> </tr> <tr> <td>3</td> <td>자체 대내 포상</td> <td>2</td> </tr> </tbody> </table>	번호	구분	인정 포인트	1	금융정보분석원(금융위원회) 포상	4	2	기타 AML 관련 정부 혹은 공공기관 포상	3	3	자체 대내 포상	2	<p>금융회사작성</p> <p>□범위평가</p> <p>*포인트>=6(5점)</p> <p>*포인트>=4(4점)</p> <p>*포인트>=3(3점)</p> <p>*포인트>=2(2점)</p> <p>*포인트<=1(0점)</p>
번호	구분	인정 포인트													
1	금융정보분석원(금융위원회) 포상	4													
2	기타 AML 관련 정부 혹은 공공기관 포상	3													
3	자체 대내 포상	2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 1명당 최고포인트 1개만 인정하며, 대상이 여러명인 경우 합산 가능</p> <p>[산출식] 점수 구분표에 따른 대내외 포상 등 실적 점수</p> <p>[입력항목] 포인트</p>	
취약점 점검	(O.12.05.01) 직원알기제도 실행 실적 (5점, 상대평가)	<p>[지표] 임직원과 관련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취약점 식별활동 실적</p> <p>[설명] 직원알기제도(Know Your Employee): 임직원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식별된 경우 이를 경감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 등의 개선 조치를 수행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평가기간 중 KYE를 실시한 실적 3. 직원 인력 수 산정 시 휴직자는 제외 가능함</p> <p>[산출식] 임직원 KYE 수행비율 = (KYE 수행 직원수 / 전 직원수) × 100</p> <p>[입력항목] 1) 총 직원수, 2) KYE 수행 직원수</p>	금융회사작성
취약점 점검	(O.12.05.02) 임직원 관련 룰 규모 (5점, 절대평가)	<p>[지표] 임직원과 관련된 의심거래 식별을 위한 STR를 운영</p> <p>[설명] 임직원과 관련된 의심거래를 식별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STR를 운영</p> <p>[산정 기준/범위]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임직원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경우 “해당없음” 처리가 가능함,</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수분</p> <p>*개수>=4(5점) *개수>=3(4점) *개수>=2(3점) *개수>=1(2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다만 임직원 거래가 불가하다는 내규 및 지침 등이 반드시 필요</p> <p>3. 임직원의 의심거래를 식별하는 별도의 룰에 대해서만 인정(일반 STR룰은 미인정)</p> <p>[산출식] 임직원과 관련된 의심거래 식별을 위한 STR 룰 규모</p> <p>[입력항목] STR 룰 개수(개수)</p>	<p>*개수<1(0%)</p> <p>※ 해당없음 (내부직원 거래불가)</p>
<p>취약점 점검</p>	<p>(O.12.05.03) AML/CFT 자료보관 점검 (5점, 절대평가)</p>	<p>[지표] AML/CFT 자료의 일정기간 보관에 대한 점검 실적</p> <p>[설명]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장 자료보존에 의거하여 금융기관 및 DNFBP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AML/CFT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자료보관 기간: 5년 이상 3. 자료보관 관리: 자료보관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p>[산출식] 자료보관 관리수준 중 해당사항을 입력</p> <p>[입력항목] 점검 여부(구분-해당번호입력)</p>	<p>금융회사작성</p> <p>□구분</p> <p>①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AML 관련자료5년 이상 보관여부점검을 시행하는 경우(5점)</p> <p>②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AML 관련자료 5년 이상 보관 여부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0점)</p>
<p>취약점 점검</p>	<p>(O.12.05.04) 보고PC 보관자료</p>	<p>[지표] PC(AML시스템 사용자PC, STR/CTR보고용PC)의 자료에 대한 이관 및 삭제 점검실적을 평가</p>	<p>금융회사작성</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삭제 실적 (5점, 절대평가)</p>	<p>[설명] PC(AML시스템 사용자PC, STR/CTR보고용 PC)에 대한 자료 이관 및 삭제 검토 실적 평가</p> <p>[산정 기준/범위]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산출식] 1년간 자료 이관 및 삭제를 위한 검토를 시행한 횟수</p> <p>[입력항목] 자료 삭제 검토 횟수(구분-해당번호입력)</p>	<p><input type="checkbox"/>구분</p> <p>①자료이관 및 이관 자료삭제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0점)</p> <p>②연1회 검토 할 경우(2점)</p> <p>③연2회 검토 할 경우(3점)</p> <p>④연3회 검토 할 경우(4점)</p> <p>⑤연4회 이상 검토 할 경우(5점)</p>
<p>취약점 점검</p>	<p>(O.12.05.05) AML/CFT 정보보안 점검 실적 (5점, 절대평가)</p>	<p>[지표] 정보보안기준에 따라 AML시스템의 취약점 점검실적을 평가</p> <p>[설명] AML/CFT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한 실적을 평가</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점검대상 : AML/CFT 관련 시스템 전체(보고PC 포함) 점검방식 - IT 전문인력을 통하여 점검한 경우만 해당 <p>[산출식] 1년간 취약점 점검실적을 평가</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구분</p> <p>①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0점)</p> <p>②연1회 검토 할 경우(2점)</p> <p>③연2회 검토 할 경우(3점)</p> <p>④연3회 검토 할 경우(4점)</p> <p>⑤외부 보안전문 기관</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입력항목] 점검횟수(구분-해당번호입력)</p>	<p>을 통하여 점검한 경 우(5점)</p>
<p>취약점 점검</p>	<p>(O.12.05.06) AML 취약점 점검 실적 (30점, 절대평가)</p>	<p>[지표] 금융회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조치하기 위해 테마점검을 실시한 현황 * 금융회사 등은 매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전사위험을 식별 해야함 (위험식별을 위한 조직, 절차, 방법론을 운영해야함)</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 평가, 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3.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상응한 조치를 마련해야함 * 위험기반접근법 : 위험이 높은 곳에 자원을 집중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저 위험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대책 마련 4. FATF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위험 수준에 맞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완화 조치를 이행해야함 5. 고위험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위험에 맞게 적절한 대응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6. 금융회사 등은 자체적인 역량(자원)을 통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대비한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취약점 개선 활동을 해야 함 7. 취약점 점검 테마활동은 전사에 대한 활동만 해당 8. 동일·유사한 내용의 위험, 취약점 식별 활동을 다수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수행한 경우 1건으로 계산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각 점검별 계획 및 결과보고서가 있는 활동만 인정 가능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구분 *횟수>=4(30점) *횟수>=3(23점) *횟수>=2(15점) *횟수>=1(8점) *횟수<1(0%)</p> <p>* 배점비율</p>

분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고
		<p>[산출식] 금융회사 등은 자체적인 역량(자원)을 통해 AML 취약점 점검을 실행한 횟수 * 점검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전사위험을 점검한 실적만 해당</p> <p>[입력항목] AML 테마점검 횟수(횟수)</p>	
취약점 점검	(O.12.05.07) AML/CFT 위험 경감/개선실적 (20점, 상대평가)	<p>[지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식별한 위험에 대한 개선 조치 실적 * AML 취약점 점검실적(O.12.05.06)에서 발견된 위험에 대한 개선조치 실적의 비율로 보고기간 중 식별된 건수에 대한 개선 조치 실적</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 평가, 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3.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상응한 조치를 마련해야함 * 위험기반접근법 : 위험이 높은 곳에 자원을 집중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저 위험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대책 마련 4. FATF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위험 수준에 맞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완화 조치를 이행해야함 5. 고위험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위험에 맞게 적절한 대응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6. 동일·유사한 내용의 위험, 취약점 식별 활동을 다수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수행한 경우 1건으로 계산 <p>[산정 기준/범위]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산출식] 금융회사 취약점 점검에 대한 개선조치 비율 = (개선조치 완료 건수) ÷ (취약점 식별</p>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건수) × 100 [입력항목] 1) 취약점 식별건수, 2) 개선조치 완료 건수	
취약점 점검	(O.12.05.08) 신상품 위험평가 실적 (5점, 상대평가)	[지표]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검토 실적 평가 [설명]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자금세탁위험 검토실적 평가 [산정 기준/범위]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유사상품/서비스에 대해 이전에 평가한 내용으로 같음한 것은 검토 실적으로 인정안함 3. 평가 기간 중 상품 출시 전 위험평가를 실시한 것만 해당 인정 (위험평가 실시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건) [산출식] 신상품 자금세탁 위험 평가 비율 = (위험평가한 상품 개수) ÷ (신상품 개수) × 100 [입력항목] 1) 신상품 총 개수, 2) 위험평가한 상품 개수	금융회사작성 ※ 해당없음 (신상품 없음)

3. 고객확인

분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고
<p>EDD- 이행수준</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O.13.01.01) 고객확인 상급자 재확인 실적 (30점, 상대평가)</p>	<p>[지표] 고객확인을 수행한 내역에 대해 상급자 재확인을 통해 신뢰성 확보</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확인의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객확인을 수행한 자가 아닌 창구 직원의 상급자가 고객확인 내역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함 2. 고객확인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수행되면 고위험 고객을 식별하지 못하여 필요한 통제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3. 상급자(또는 본점의 고객확인 부서)가 확인한 건수만 인정되며, 검사부에 의한 검증건은 제외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1년간 2. 고객확인의무 대상: 신규 고객 및 재이행주기도래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 고객 * CDD 대상고객과 EDD 대상고객을 모두 포함 3. 고객확인내역 재확인 : 필수 및 추가정보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서 상급자(또는 본점의 고객확인 부서)가 재확인을 실시 4. 샘플점검 및 검사부 검증은 해당되지 않음 <p>[산출식] 고객확인내역 재확인 비율 = (고객확인내역 재확인 총 건수) ÷ (고객확인 총 건수) × 100</p> <p>[입력항목] 1) 고객확인 총 건수, 2) 상급자에 의한 재확인 고객확인 총 건수</p>	<p>금융회사작성</p>
<p>CDD</p>	<p>(O.13.01.02)</p>	<p>[지표] 법인 고객의 고객확인(실제소유자 확인 포함) 재확인 실적</p>	<p>금융회사작성</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이행수준	법인고객 고객확인 재확인 실적 (20점, 상대평가)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실제소유자 확인 포함)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객확인을 수행한 자가 아닌 <u>창구 직원의 상급자(또는 본점의 고객확인 부서)가 고객확인 내역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함</u> 2. 고객확인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수행되면 고위험 고객을 식별하지 못하여 필요한 통제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3. 상급자(또는 본점의 고객확인 부서)가 <u>고객확인 각 건에 대해 재확인한 건수만 인정</u>되며, 샘플 점검 및 검사부에 의한 검증건은 제외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전 1년간 2.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한 고객 중 법인의 실제소유자 확인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는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리법인/합명회사: (대표)사원 혹은 업무집행자 나. 영리법인/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다. 영리법인/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사원 라. 영리법인/주식회사: 주주,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마. 영리법인/유한회사: (대표)이사 바. 비영리사단법인/사단법인: (대표)사원 사. 비영리재단법인/일반재단법인: 이사장 아. 비영리재단법인/학교법인: 이사장 자. 비영리재단법인/의료법인 및 의료인단체: 협회장 또는 이사장 차. 비영리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카. 비영리재단법인/기타법률에 따른 재단: 이사장 3. 고객확인(실제소유자 확인 등) 대상: 법인 중 신규 고객 및 재이행주기 도래고객 	※ 해당없음 (신규 및 재이행주기 법인고객 없음)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가. 신규 고객으로 인한 고객확인 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고객 다. 자금세탁행위등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한 경우 * CDD 대상고객과 EDD 대상고객을 모두 포함</p> <p>4. 고객이 여러 구분코드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복 없이 입력 5. 샘플점검 및 검사부 검증은 해당되지 않음</p> <p>[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 1. 비상장 법인고객에 대해서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 2.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주요임원 3. 대표자</p> <p>[산출식] 법인 고객확인 재확인 비율 = (재확인 건수) ÷ (법인 고객의 고객확인 총 건수) × 100</p> <p>[입력항목] 1) 법인고객의 고객확인 총 건수, 2) 재확인 건수</p>	
<p>CDD 이행수준</p>	<p>(O.13.01.03) 개인 및 임의단체 고객확인 재확인 실적 (20점, 상대평가)</p>	<p>[지표] 개인 및 임의단체 고객의 고객확인(실제소유자 확인 포함) 재확인 실적</p> <p>[설명] 1. 개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실제소유자 확인 포함)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객확인을 수행한 자가 아닌 <u>창구 직원의 상급자(또는 본점의 고객확인 부서)가 고객확인 내역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함</u> 2. 고객확인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수행되면 고위험 고객을 식별하지 못하여 필요한 통제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3. 상급자(또는 본점의 고객확인 부서)가 <u>고객확인 각 건에 대해 재확인한 건수만 인정</u>되며, 샘플 점검 및 검사부에 의한 검증건은 제외</p>	<p>금융회사작성 ※ 해당없음 (신규 및 재이행주기 개인고객 없음)</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개인 및 임의단체는 개인(거주자), 개인(비거주자), 개인(임의단체), 개인사업자(거주자), 개인사업자(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동 지표의 개인은 임의단체까지 포함 * 임의단체 고객 : 종친회, 동문회 등 일반적인 개인 고객의 경우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로 확인 고객확인(실제소유자 확인 등) 대상: 개인 중 신규 고객 및 재이행주기 도래고객 가. 신규 고객으로 인한 고객확인 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고객 다. 자금세탁행위등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한 경우 * CDD 대상고객과 EDD 대상고객을 모두 포함 고객이 여러 구분코드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복 없이 입력 샘플점검 및 감사부 검증은 해당되지 않음 <p>[산출식] 개인 고객확인 재확인 비율 = (재확인 건수) ÷ (개인 및 임의단체 고객의 고객확인 총 건수) × 100</p> <p>[입력항목] 1) 개인 및 임의단체 고객의 고객확인 총 건수, 2) 재확인 건수</p>	
CDD 이행수준	(O.13.01.04) 지속적인 고객확인 수행 실적 (20점, 상대평가)	<p>[지표] 지속적인 고객확인 수행 실적</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운용하는 업무지침에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을 포함하여야 함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대한 업무규정 	금융회사작성 ※ 해당없음 (재확인주기 고객 없음)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가.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기관 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p> <p>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p> <p>다.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p> <p>3.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야 함</p> <p>4.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p> <p>5.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고객은 '재확인주기 도래 고객 수'에서 제외 가능 (※특금법상 재확인 예외 대상이 아닌 평가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2. 지속적인 고객확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최초 거래 시" 뿐만 아니라 고객 위험도에 따라 주기를 설정하여 고객확인을 재이행</p> <p>[산출식] 지속적인 고객확인 비율 =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한 고객 수 ÷ 재확인 주기가 도래한 고객 수) × 100</p> <p>[입력항목] 1) 재확인 주기도래 고객수, 2) 재확인 이행 고객 수</p>	
CDD 이행수준	(O.13.01.05) 제3자 및 아웃소싱의 고객확인 의무 점검	[지표] 제3자 및 아웃소싱 업체의 고객확인의무 점검 [설명]	금융회사작성 ※ 해당없음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실적 (5점, 상대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기관 및 DNFBP가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 확인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당해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임 2. 제3자는 AML/CFT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함 3. 고객확인을 제3자가 하는 경우 최종책임은 당해 금융기관 및 DNFBP에 있음 4. 아웃소싱은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지 않지만 금융기관 및 DNFBP의 통제를 기반으로 금융기관 및 DNFBP를 대신하여 고객확인 조치를 효과적으로 구현해야 함 5. 제3자 및 아웃소싱이 고객확인의무 수행한 것에 대해 완전성과 정확성을 재확인하여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제3자와 아웃소싱은 금융기관 및 DNFBP에 따라 정의/대상이 다를 수 있음 3. 제3자(예시):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받아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은행, 카드사의 상품을 위탁받아 카드가입을 판매하는 은행 등 4. 아웃소싱(예시): 카드 모집인 또는 배송인, 금융기관의 고객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보험설계사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등으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1개 업체로 산정 5. 고객확인의무 위탁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서를 작성/제출 후, 보험사 본지점/콜센터에서 본인확인 등의 절차 수행 후 계약처리 나. 카드모집인을 통해 카드신청서를 작성/제출 후, 카드사 본지점/콜센터에서 본인확인 등의 절차 수행 후 신청처리 다. 카드 배송인이 고객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 수행 후 고객에게 실물카드를 전달 	<p>(제3자(아웃소싱 등)를 통한 고객확인 없음)</p>

분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고
		<p>[산출식] 제3자 및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점검 비율 = (고객확인 의무 감사/검사/점검을 수행한 업체 건수) ÷ (제3자 및 아웃소싱 업체 수) × 100</p> <p>[입력항목] 1) 제3자 및 아웃소싱 업체 총 수, 2) 고객확인에 대한 점검을 수행한 업체 수</p>	
<p>CDD 이행수준</p>	<p>(O.13.01.06) 외국환거래 고객확인 수행 실적 (5점, 상대평가)</p>	<p>[지표] 외국환거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수행 실적</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환거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가 높은 상품/서비스에 해당함 2. 환거래계약이란 은행(환거래은행)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환거래서비스)를 국외의 은행(환거래요청은행)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관계를 수립 하는 것임 3.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행 또는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또는 국가에 설립된 은행(위장은행)이 환거래요청은행의 환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환거래은행은 입수 가능하거나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환거래요청은행의 평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조사 또는 규제대상 여부 등의 감독수준 평가해야 함 5. 환거래요청은행이 대리지불계좌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자신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해야 함 6. 환거래요청은행은 환거래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신원확인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해야 함 7. 환거래은행은 새로운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임원 등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함 8. 환거래은행은 환거래요청은행이 고객확인 의무 수행한 것에 대해 완전성과 정확성을 재확인하여 고객확인 의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p>[산정 기준/범위]</p>	<p>금융회사작성</p> <p>※ 해당없음 (신규 및 재이행주기 환거래고객 없음)</p>

분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고
		<p>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2. 고객확인의무 대상</p> <p>가. 신규 고객 및 재이행주기도래 고객</p> <p>나. 신규 고객으로 인한 고객확인</p> <p>다.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도래 고객</p> <p>[산출식] 고객확인의무 이행 비율 = (고객확인 건수) ÷ (고객확인의무 대상 수) × 100</p> <p>[입력항목] 1) 고객확인의무 대상 수, 2) 고객확인 건수</p>	
<p>CDD 이행수준</p>	<p>(O.13.01.07) 외국환거래 고객확인 재확인 실적 (5점, 상대평가)</p>	<p>[지표] 외국환거래 고객확인내역에 대한 신뢰성 점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환거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가 높은 상품/서비스에 해당함 2. 환거래계약이란 은행(환거래은행)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환거래서비스)를 국외의 은행(환거래요청 은행)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임 3.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행 또는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또는 국가에 설립된 은행(위장 은행)이 환거래요청은행의 환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환거래은행은 입수 가능하거나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환거래요청은행의 평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조사 또는 규제대상 여부 등의 감독수준 평가해야 함 5. 환거래요청은행이 대리지불계좌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자신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해야 함 6. 환거래요청은행은 환거래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신원확인 및 관련된 정보의 제공해야 함 7. 환거래은행은 새로운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임원 등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함 	<p>금융회사작성</p> <p>※ 해당없음 (신규 및 재이행주기 환거래고객 없음)</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8. 환거래은행은 환거래요청은행이 고객확인 의무 수행한 것에 대해 완전성과 정확성을 재확인 하여 고객확인 의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2. 고객확인 의무 대상: 신규 고객 및 재이행주기 도래 고객</p> <p>가. 신규 고객으로 인한 고객확인</p> <p>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고객</p> <p>3. 고객확인내역 재확인: 필수 및 추가정보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서 별도로 재확인</p> <p>[산출식] 고객확인내역 재확인 비율 = (고객확인내역 재확인 건수) ÷ (고객확인내역) × 100</p> <p>[입력항목] 1) 고객확인 건수, 2) 고객확인 재확인 건수</p>	
<p>CDD 이행수준</p>	<p>(O.13.01.08) 외국환거래 지속적인 고객확인 실적 (5점, 상대평가)</p>	<p>[지표] 외국환거래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재확인 수행 비율</p> <p>[설명]</p> <p>1. 외국환거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가 높은 상품/서비스에 해당함</p> <p>2.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대한 업무규정</p> <p>가.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기관 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 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p> <p>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p> <p>다.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p> <p>3. 환거래계약이란 은행(환거래은행)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환거래서비스)를 국외의 은행(환거</p>	<p>금융회사작성</p> <p>※ 해당없음 (신규 및 재이행주기 환거래고객 없음)</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래요청은행)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관계를 수립 하는 것임</p> <p>4.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행 또는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또는 국가에 설립된 은행(위장 은행)이 환거래요청은행의 환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p> <p>5. 환거래은행은 입수 가능하거나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환거래요청은행의 평판, 자금세탁/테러 자금조달과 관련된 조사 또는 규제대상 여부 등의 감독수준 평가해야 함</p> <p>6. 환거래요청은행이 대리지불계좌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자신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해야 함</p> <p>7. 환거래요청은행은 환거래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신원확인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해야 함</p> <p>8. 환거래은행은 새로운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임원 등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2. 지속적인 고객확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최초 거래 시" 뿐만 아니라 고객 위험도에 따라 주기를 설정하여 고객확인을 재이행</p> <p>[산출식] 지속적인 고객확인 비율 =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한 고객수 ÷ 재확인 주기가 도래한 고객수) × 100</p> <p>[입력항목] 1) 재확인 주기 도래 고객수, 2)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고객수</p>	
CDD 이행수준	(O.13.01.10) 일회성 금융거래고객 재확인 실적	<p>[지표]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수행 내역을 상급자가 재확인하여 신뢰성 확보</p> <p>[설명]</p> <p>1.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객</p>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5점, 상대평가)	<p>확인을 수행한 자가 아닌 <u>창구 직원의 상급자가 고객확인 내역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함</u></p> <p>2. 일회성 금융거래는 다음을 포함함 가.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나.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다. 보호예수(불합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라. 선불카드 매매</p> <p>3. 기준금액(시행령 확인)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확인 의무대상에 해당</p> <p>4.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연결거래는 고객 확인 의무대상에 포함되며 연결거래 이후 최초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시점에 고객확인 실시</p> <p>5. 상급자(또는 본점의 고객확인 부서)가 <u>고객확인 각 건에 대해 확인한 건수만 인정되며, 검사 부에 의한 검증건은 제외</u></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1년간</p> <p>2. 대상 : 기준금액(시행령 확인)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p> <p>3.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연결거래 포함</p> <p>4. 고객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 생략 가능 (단, 지속적인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생략 불가 필수)</p> <p>5. 고객확인내역 재확인 :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내역에 대해 필수 및 추가정보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상급자(또는 본점의 고객확인 부서)가 재확인한 경우 인정</p> <p>6. 샘플점검 및 검사부 검증은 해당되지 않음</p> <p>[산출식] 일회성금융거래 고객확인 재확인 비율 = (고객확인내역 재확인 총 건수) ÷ (일회성 금융거래 고객확인 총 건수) × 100</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CDD 이행수준</p>	<p>(O.13.01.11) 법인고객 검증 실적 (20점, 상대평가)</p>	<p>[입력항목] 1) 일회성 금융거래 고객확인 총 건수, 2) 상급자에 의한 재확인 고객확인 총 건수 [지표] 법인 고객의 검증 실적</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u>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함</u> 고객확인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수행되면 고위험 고객을 식별하지 못하여 필요한 통제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u>고객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만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u>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은 금융회사 내부에서 원본(진위여부)을 대조·확인한 경우 인정 법인고객 신원정보 검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인(단체)명 나. 실명번호 다.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의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라. 업종(영리법인 경우) 마.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문서적 검증방법(예)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비문서적 검증방법(예) : 금감원 전자공시(DART),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신용 기업정보 제공서비스 등 기타 금융회사등에서 내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검증기준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검증한 경우 인정 단, 고객을 통해 수집한 정보 외의 방법으로 그 고객확인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함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1년간 검증대상 : 평가대상 기간 중 법인 고객확인을 이행한 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고객위험평가 결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는 검증대상 제외가능 	<p>금융회사작성</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p> <p>나.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p> <p>다.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 검증대상 제외시, 해당 시점의 고객평가 결과를 증빙자료로 보관</p> <p>4. 샘플검증 및 검사부 검증은 해당되지 않음</p> <p>[산출식] 법인 검증 비율 = (법인고객 검증 총 건수³⁾) ÷ (법인고객 검증대상 총 건수¹⁻²⁾) × 100</p> <p>[입력항목] 1) 법인고객 중 고객확인 대상 건수(O.13.01.02지표와 동일), 2) 법인고객 중 검증제외 대상 건수, 3) 법인고객 검증 총 건수</p>	
<p>CDD 이행수준</p>	<p>(O.13.01.12) 개인 및 임의단체 검증 실적 (20점, 상대평가)</p>	<p>[지표] 개인(임의단체 포함) 고객의 검증 실적</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u>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함</u> 고객확인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수행되면 고위험 고객을 식별하지 못하여 필요한 통제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u>고객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만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u> 개인고객 신원정보 검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명 나. 생년월일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다. 실명번호 라.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마.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p>금융회사작성</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5.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함</p> <p>가. 실명확인증표(실명확인서류 포함)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경우</p> <p>나.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p> <p>*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것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만 가능</p> <p>6. 문서적 검증방법(예) :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 여권+외국인등록증(or 국내거소증) 등</p> <p>7. 비문서적 검증방법(예) : 1382 전화,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운전면허 발급·대행기관(경찰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신용정보 기관을 통한 확인 등</p> <p>8. 기타 금융회사등에서 내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검증기준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검증한 경우 인정 단, 고객을 통해 수집한 정보 외의 방법으로 그 고객확인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함</p> <p>* CI 취급고객 검증기준 등 자체 검증기준은 내규 등 문서상 검증기준이 명확한 것만 인정</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1년간</p> <p>2. 검증대상 : 평가대상 기간 중 개인 및 임의단체 고객확인을 이행한 건</p> <p>3. 개인 및 임의단체는 개인(거주자), 개인(비거주자), 개인(임의단체), 개인사업자(거주자), 개인사업자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동 지표의 개인은 임의단체까지 포함</p> <p>* 임의단체 고객 : 종친회, 동문회 등</p> <p>4. 아래에 해당하면서, 고객위험평가 결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는 검증대상 제외</p> <p>가. 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 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p> <p>나. 보험계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p> <p>다. 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구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 검증대상 제외시, 해당 시점의 고객평가 결과를 증빙자료로 보관</p> <p>5. 샘플검증 및 검사부 검증은 해당되지 않음</p> <p>[산출식] 개인(임의단체 포함) 검증 비율 = (개인고객 검증 총 건수³⁾) ÷ (개인고객 검증대상 총 건수^{1)·2)}) × 100</p> <p>[입력항목] 1) 개인고객 중 고객확인 대상 건수(O.13.01.03지표와 동일), 2) 개인고객 중 검증제외 대상 건수, 3) 개인고객 검증 총 건수</p>	
<p>CDD 이행수준</p>	<p>(O.13.01.13) 고객확인 주기별 점검 실적 (20점, 상대평가)</p>	<p>[지표] 고객확인을 수행한 내역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신뢰성 확보</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확인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객확인을 수행한 내역에 대해 <u>주기별(월별 또는 분기별 등)로 고객확인 내역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u>해야 함 2. 고객확인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수행되면 고위험 고객을 식별하지 못하여 필요한 통제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3. 평가대상기간 중 고객확인을 수행한 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 실적을 평가 4. 본점의 고객확인 부서 등에서 일정한 주기별로 검토한 점검실적만 인정되며, <u>검사부에 의한 검증건 및 상급자에 의한 건별 재확인</u>은 제외(동일 점검행위에 대한 중복인정 불가)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1년간 2. 점검대상 : 평가대상 기간 중 고객확인을 이행한 모든 건 3. 점검인정기간(총 14개월): <u>평가대상기간 + 이후 2달</u> (주기적 검증을 위한 추가시간 부여) * 예시) '24년 12월말 기준 평가인 경우 '24년 고객확인 내역' 평가대상기간에 대해 '25년 2월까지' 이후 2달 	<p>금융회사작성</p> <p>※ 해당없음 (샘플점검 실시)</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주기적 확인을 한 경우 실적에 포함</p> <p>4. 고객확인내역 점검 : 필수 및 추가정보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서 본점의 고객확인 부서 등에서 일정한 주기별로 점검한 건수만 인정</p> <p>* 고객확인 검증 및 건별 상급자 재확인과 별도로, 고객확인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p> <p>5. 샘플점검 및 감사부 검증은 해당되지 않음</p> <p>[산출식] 고객확인 주기적 점검 비율 = (고객확인 주기적 점검 총 건수) ÷ (고객확인 총 건수) × 100</p> <p>[입력항목] 1) 고객확인 총 건수(평가대상기간 1년간), 2) 고객확인 주기적 점검 총 건수</p>	
<p>EDD 이행수준</p>	<p>(O.13.01.09) 고위험국가 고객확인 재확인 실적 (10점, 상대평가)</p>	<p>[지표] 고위험 국가 고객에 대한 EDD 재확인비율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및 DNFBP는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함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FATF가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나. FATF Statement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다. 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라.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고위험국가의 국적자인지, 해당 지역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객인지 확인해야 함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고위험국가 관련자로 확인된 때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함 지속적으로 고위험국가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고위험국가 관련자인 경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p>금융회사작성</p> <p>※ 해당없음 (고위험국가 고객 없음)</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6. 고위험국가 확인의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위험국가 확인의무를 수행한 자, 검사부가 아닌 창구직원의 <u>상급자가 고위험국가 확인내역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함</u></p> <p>7. 고위험국가 확인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수행되면 고위험 고객을 식별하지 못하여 필요한 통제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자금세탁/테러 자금조달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및 DNFBP에 대한 신뢰성 악화로 제재를 받게 됨</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2. 고위험국가 확인의무 대상: 고위험국가 관련 신규 고객 및 재이행주기 도래 고객</p> <p>가. 신규 고객으로 인한 고위험국가 확인</p> <p>나. 지속적인 고위험국가 확인을 위한 재이행 주기가 도래한 고위험국가 관련 고객</p> <p>3. 고위험국가 확인내역 재확인: 필수 및 추가정보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서 별도로 재확인, 고위험 국가와 관련된 고객의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에 따라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거래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함</p> <p>[산출식] 고위험국가 확인내역 재확인 비율 = (고위험국가 확인내역 재확인 건수) ÷ (고위험국가 확인의무 대상 건수) × 100</p> <p>[입력항목] 1) 고위험국가 확인의무 대상 건수, 2) 상급자에 의한 고객확인 재확인 건수</p>	
EDD 이행수준	(O.13.02.01) 종합자산관리 대상자 DB화 (5점, 절대평가)	<p>[지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관리대상에 대한 종합자산관리 대상자 DB화 여부 평가</p> <p>[설명]</p> <p>1.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해당</p>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합</p> <p>2. 금융기관 및 DNFBP로부터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금융기관 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p> <p>3. 해당 고객에 대해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의 상위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함</p> <p>[산정 기준/범위]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p> <p>[산출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대상자 DB화 여부</p> <p>[입력항목] DB화 여부(여부-해당번호입력)</p>	<p>□여부</p> <p>①DB화하여 관리(5점)</p> <p>②미관리(0점)</p> <p>※ 해당없음 (종합자산관리대상자 없음)</p>
<p>EDD 이행수준</p>	<p>(O.13.02.02) 고객위험평가 수행 실적 (20점, 상대평가)</p>	<p>[지표] 고객의 위험을 평가한 실적을 평가</p> <p>[설명]</p> <p>1. 금융회사등은 고객별로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고객 위험평가의 실적을 평가</p> <p>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하여 확인된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응하는 위험기반접근법(위험이 높은 곳에 자원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적용해야 함</p> <p>3. 금융회사 등의 AML/CFT 체계 전반에 걸쳐 정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위해, FATF 위험기반접근법(RBA)에 따라 위험평가를 수행해야 함</p> <p>* 위험기반접근법 : 위험평가결과 위험이 높은 곳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위험이 낮은 곳은 간소화된 대책 수립</p> <p>4. 고위험으로 확인된 경우, EDD를 수행하고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동일인에 대해 평가기간 중 여러번 위험평가를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고객별 최대 1건) 3. 평가기간 중 금융거래가 없었던 고객은 고객위험평가 제외 가능 <p>[산출식] 고객 위험평가 비율 = (위험평가를 실시한 고객 수) ÷ (총 고객수) × 100</p> <p>[입력항목] 1) 총 고객수, 2) 위험평가 실시 고객 수</p>	
Watch List 관리	(O.13.03.01) 신규고객 Watch List 대사 재확인 실적 (10점, 상대평가)	<p>[지표] 신규고객에 대한 Watch List 대사절차의 유효성 검증의 적정성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 및 DNFBP는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Watch List(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2.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 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또한 Watch List 대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Watch List 대사를 수행한 자, 검사부가 아닌 자가 Watch List 대사내역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함 4. Watch List 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으면 요주의인물을 식별하지 못하여 필요한 통제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및 DNFBP 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고 제재를 받게 됨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금융회사작성 ※ 해당없음 (WatchList 재확인대상 없음)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2. Watch List 대사 대상: 신규 고객</p> <p>3. Watch List 필터링: 신규고객이 요주의인물과 동일인으로 판단되거나 예측됨</p> <p>4. Watch List 필터링 재확인: 대사결과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서 별도로 재확인</p> <p>[산출식]</p> <p>1. 필터링된 것만 / 2. 대사내역 전체</p> <p>2. Watch List 필터링 재확인 비율 = (Watch List 필터링 재확인 건수) ÷ (Watch List 필터링 건수) × 100</p> <p>[입력항목] 1) Watch List 필터링 건수, 2) Watch List 필터링 재확인 건수</p>	
Watch List 관리	(O.13.03.02) Watch List 최신화 주기 (10점, 절대평가)	<p>[지표] Watch List 업데이트 주기 평가</p> <p>[설명]</p> <p>1.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Watch List(요주의 인물 리스트)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함</p> <p>2. Watch List (예시)</p> <p>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p> <p>나.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p> <p>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 리스트 등</p> <p>- PEP :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p> <p>3.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금융회사작성</p> <p>□구분</p> <p>①주 단위(10점)</p> <p>②월 단위(8점)</p> <p>③분기 단위(6점)</p> <p>④반기 단위(4점)</p> <p>⑤연 단위(2점)</p> <p>⑥연 이상(0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Watch List 업데이트 주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 단위, 수시 나. 월 단위 다. 분기 단위 라. 반기 단위 마. 연 단위 사. 연 이상 <p>[산출식] Watch List 업데이트 주기</p> <p>[입력항목] 주기(구분-해당번호입력)</p>	
Watch List 관리	(O.13.03.03) 최신 Watch List 기준 일괄 확인 실적 (10점, 상대평가)	<p>[지표] Watch List 업데이트 후 일괄 대사 수행 실적</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Watch List(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함 2. Watch List(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나.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 리스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P :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3.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 	금융회사작성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4. Watch List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2. Watch List 업데이트 후 일괄 대사 대상: 고객확인 의무 대상과 동일</p> <p>3. Watch List 업데이트 없이 수행한 매칭작업은 포함하지 않음</p> <p>4. 수행일자가 같으면 1건으로 계산함</p> <p>[산출식] 최신의 Watch List로 일괄 Watch List 매칭작업을 수행한 횟수(최대 365 횟수)</p> <p>[입력항목] 일괄 대사 횟수(횟수)</p>	
Watch List 관리	(O.13.03.04) Watch List 고객확인 수행실적 (10점, 상대평가)	<p>[지표] Watch List(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수행 실적</p> <p>[설명]</p> <p>1.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Watch List(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함</p> <p>2. Watch List(예시)</p> <p>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p> <p>나.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p> <p>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 리스트 등</p> <p>- PEP :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p> <p>3.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금융회사작성 ※ 해당없음 (Watch List 대상고객 없음)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고객확인 의무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규 고객 및 재이행주기도래 고객 나. 신규 고객으로 인한 고객확인 다.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도래 고객 <p>[산출식] Watch List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 비율 = (Watch List 해당 고객 확인 건수) ÷ (Watch List 해당 고객 확인 대상 수) × 100</p> <p>[입력항목] 1) Watch List 해당 고객 확인 대상 수, 2) Watch List 해당 고객 확인 건수 ※ Watch List에 해당하는 당사고객(보유고객)¹⁾에 대해 고객확인을 수행한 실적²⁾을 입력</p>	

4. CTR·STR 보고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STR 관리	(O.14.01.01) 가상계좌 관련 STR를 규모 (5점, 상대평가)	<p>[지표] 가상계좌와 관련된 의심거래 식별을 위한 STR를 규모</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계좌: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의 입금 및 출금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고객에게 부여하는 입금확인번호 가상계좌는 은행에서 기업에게 부여한 무통장입금융 계좌와 달리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부여함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가상계좌의 의심거래 식별을 위한 별도의 룰에 대해서만 인정(일반계좌 대상 STR률은 미인정) <p>[산출식] 가상계좌와 관련된 STR를 개수</p> <p>[입력항목] STR를 개수(개수)</p>	금융회사작성 ※ 해당없음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없음)
STR 관리	(O.14.01.02) 종합자산관리 관련 STR를 규모 (5점, 상대평가)	<p>[지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STR를 개수 평가</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해당함 금융기관 및 DNFBP로부터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금융기관 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해당 고객에 대해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의 상위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금융회사작성 ※ 해당없음 (종합자산관리대상자 없음)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 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2. 종합자산관리 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룰에 대해서만 인정(일반 STR룰은 미인정) <p>[산출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관련 STR룰 개수</p> <p>[입력항목] STR룰 개수(개수)</p>	
<p>STR 관리</p>	<p>(O.14.01.03) 종합자산관리 관련 STR 실적 (5점, 절대평가)</p>	<p>[지표] 종합자산관리 대상자에 대한 STR 보고비율</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해당 함 2. 금융기관 및 DNFBP로부터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금융기관 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3. 해당 고객에 대해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의 상위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4.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 대비 STR 보고대상자 수의 비율 5. 동일인 중복 제거(동일인에 대해 여러건의 STR이 보고된 경우 1로 취급) <p>[산정 기준/범위]</p> <p>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산출식] STR 보고비율 = (STR보고대상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수) ÷ (총 종합자산관리서비</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구분(비율) *비율>=3%(만점)</p> <p>· 만점 비율에 따라 점수 조정</p> <p>※ 해당없음 (종합자산관리대상자 없음)</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스 대상자수) × 100</p> <p>[입력항목] 1) STR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총 고객수, 2) STR 대상 고객수</p>	
STR 관리	(O.14.01.04) 외부정보 활용을 통한 STR 실적 (20점, 상대평가)	<p>[지표] 신문이나 언론 등 외부뉴스 등 외부정보를 활용하여 보고된 STR 비율 평가</p> <p>[설명] 금융회사 등은 신문이나 언론 등 외부뉴스를 수시로 검토하여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여 적시에 대응하는 AML/CFT 제도를 운영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외부정보를 활용하여 식별된 의심거래에 대한 STR 보고비율 (평가기간 총 STR건수 대비)</p> <p>[산출식] STR 보고비율 = (신문이나 언론 등 외부정보를 활용하여 식별된 의심거래에 대한 STR 보고 건수) ÷ (총 STR 건수) × 100</p> <p>[입력항목] 외부정보 STR 건수</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구분(비율) *비율>=2%(만점)</p>
STR 관리	(O.14.01.05) 정성적 STR 보고실적 (20점, 상대평가)	<p>[지표] 정성적 STR(임의보고) 실적</p> <p>[설명] 를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추출되어 검토한 것이 아닌, 직원 스스로 이상거래를 검토하여 보고한 정성적 STR(임의보고) 실적을 평가</p> <p>[산정 기준/범위]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구분(비율) *비율>=4%(만점)</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2. 룰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추출되어 검토 후 FIU에 보고한 건은 제외</p> <p>3. 직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검토가 시작된 STR만 해당</p> <p>4. 평가기간 총 STR 보고건수 대비 정성적 STR건수의 비율</p> <p>[산출식] STR 보고비율 = (정성적 STR 보고건) ÷ (총 STR 건수) X 100</p> <p>[입력항목] 정성적 STR 건수</p>	
STR 관리	<p>(O.14.01.06)</p> <p>STR 룰 유효성 점검 실적 (20점, 절대평가)</p>	<p>[지표] 운영하고 있는 STR 룰에 대해 유효성 여부를 점검한 실적을 평가</p> <p>[설명] 운영중인 STR 룰이 적정한지를 점검하고 임계치 등을 조정하여 유용하게 만드는 조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함</p> <p>[산정 기준/범위]</p> <p>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2. 룰을 점검하고 개선한 실적을 평가</p> <p>- 운영중인 모든 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한 실적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p> <p>3. 평가(점검 등)의 주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 1건만 인정</p> <p>[산출식] STR룰 유효성 점검 실적</p> <p>[입력항목] 유효성 점검 횟수(횟수)</p>	<p>금융회사작성</p> <p><input type="checkbox"/>구분</p> <p>*횟수>=2(10점)</p> <p>*횟수>=1(5점)</p> <p>*횟수<1(0점)</p>
STR 평가	<p>(O.14.01.07)</p> <p>CTR보고 대비 고액현금 STR 보고</p>	<p>[지표] CTR 보고 대비 고액현금 STR 보고 비율</p>	<p>FIU제공</p>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비율 (5점, 상대평가)	<p>[설명] CTR 보고건수 대비 고객현금 STR 보고건의 비율</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고객현금 STR 기준: CTR 보고기준금액 이상 3. CTR 보고건수의 기준은 CTR 기준문서번호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 <p>[산출식] CTR 보고 대비 고객현금 STR 보고 비율 = (고객현금 STR 보고건수) ÷ (CTR 보고건수) × 100</p> <p>[FIU제공항목] STR 비율(비율%)</p>	
STR 평가	(O.14.01.08) 외환 당타발 거래보고 대비 당타발 STR 보고 비율 (5점, 상대평가)	<p>[지표] 외환 당타발 거래 보고 대비 당타발 STR 보고 비율</p> <p>[설명] 외환당타발 거래건수와 외환당타발 STR 보고건수의 비율을 평가</p> <p>[산정 기준/범위]</p> <p>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전 1년간</p> <p>[산출식] 당타발 STR 보고 비율= (외환거래 포함 STR 보고건수) ÷ (전체 외환 당타발 거래건수) × 100</p> <p>[FIU제공항목] STR 비율(비율%)</p>	FIU제공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STR 평가	(O.14.01.09) 기초 분석율 (20점, 상대평가)	<p>[지표] STR 보고 기초 분석율</p> <p>[설명] 금융회사의 STR 보고 건수에 대한 기초분석 비율 측정</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전 1년간 2. 비교대상(업권 내 또는 전업권) 내 순위로 평가 <p>[산출식] 기초분석율(%) = (기초분석건수 ÷ STR보고 건수) × 100</p> <p>[FIU제공항목] 기초분석율 순위</p>	FIU제공
STR 평가	(O.14.01.10) 상세 분석율 (20점, 상대평가)	<p>[지표] STR 보고 상세 분석율</p> <p>[설명] 금융회사의 STR 보고 건수에 대한 상세분석 비율 측정</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비교대상(업권 내 또는 전업권) 내 순위로 평가 <p>[산출식] 상세분석율(%) = (상세분석건수 ÷ STR보고 건수) × 100</p> <p>[FIU제공항목] 상세분석율 순위</p>	FIU제공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STR 평가	(O.14.01.11) STR 반려율 (20점, 상대(역산)평가)	<p>[지표] STR 보고 반려율</p> <p>[설명] 금융회사에서 보고한 STR 보고 건수 대비 반려 건수 비율 측정</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FIU로부터 재보고요청을 받은 건수의 비율로, 재보고요청률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 <p>[산출식] STR 반려율(%) = (재보고요청건수 ÷ STR보고 건수) × 100</p> <p>[FIU제공항목] STR 반려율(비율%)</p>	FIU제공
STR 평가	(O.14.01.12) 반려 STR 미보고율 (5점, 상대(역산)평가)	<p>[지표] 반려 STR 미보고율</p> <p>[설명] 금융회사에서 보고한 STR 보고 중 FIU에서 반려를 통해 보완 요청했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비율 측정</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미보고율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 <p>[산출식]반려 STR 미보고율(%) = (미보고 건수 ÷ STR 반려 건수) × 100</p> <p>[FIU제공항목] 반려 STR 미보고율(비율%)</p>	FIU제공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STR 평가	(O.14.01.13) 법집행기관 제공 (30점, 상대평가)	<p>[지표] 법집행기관 제공건수</p> <p>[설명] 총 STR 보고건수 대비 STR 제공건 비율 - STR 제공건 중 대표문서와 병합문서를 구분하고, 대표문서 발송 건은 2배의 가중치를 부여 후 STR 보고건수 대비 법집행기관에 제공된 건을 기준으로 평가</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 2. 기간 중 보고된 STR 중 법집행기관에 제공된 STR 건수를 산정 - 제공된 STR 중 본건으로 제공된 건에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 예) 총 5건 제공(1건 본건, 4건 병합건)한 경우 → 6건으로 계산 3. 법집행기관에 제공된 건수 STR 건수로 순위 산정 4. 비교대상(업권 내 또는 전업권) 내 순위로 평가 <p>[산출식] 제공건수</p> <p>[FIU제공항목] 제공건수에 따른 순위</p>	FIU제공
STR 평가	(O.14.01.14) STR 충실도 (20점, 상대평가)	<p>[지표] STR 충실도</p> <p>[설명] 분석 건에 대한 충실도 평균</p> <p>[산정 기준/범위]</p> <p>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FIU제공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산출식] STR 분석 건에 대한 충실도 평균</p> <p>[FIU제공항목] 충실도(비율)</p>	
CTR 평가	(O.14.02.01) CTR 충실도 (10점, 상대평가)	<p>[지표] CTR 충실도</p> <p>[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TR 보고 시 보고서식에 있는 각 항목이 빠짐없이 보고되었는지 충실도 측정 2. CTR 보고 시 관련 CDD 내용 확인여부 평가 <p>[산정 기준/범위]</p> <p>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직전 1년간</p> <p>[산출식] 항목이 충실히 채워져서 보고된 비율 측정</p> <p>[지표부가설명] 총 20 항목 충실도 측정 [보고항목 평균 충실도 측정 = $\sum(20\text{개 각 항목이 채워져서 보고된 비율}) \div 20$]</p> <p>[개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자 자택주소가 기입된 비율 2. 거래자 자택우편번호가 기입된 비율 3. 거래자 자택전화번호가 기입된 비율 4. 거래자 국적코드가 기입된 비율 5. 거래자 국적이 한국이외의 경우 거래자 실명조합번호가 기입된 비율 	FIU제공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p>[법인]</p> <p>6. 대표자명이 기입된 비율</p> <p>7. 사업체 설립일이 기입된 비율</p> <p>8. 표준산업분류코드가 기입된 비율</p> <p>9. 사업체 우편번호가 기입된 비율</p> <p>10. 사업체주소가 기입된 비율</p> <p>11. 사업체 전화번호가 기입된 비율</p> <p>["거래종류항목코드가 계좌+지급, 계좌+영수일 경우 총 건수"]</p> <p>12. 거래자 계좌개설일이 기입된 비율</p> <p>13. 거래자 계좌개설점명이 기입된 비율</p> <p>14. 거래자 계좌개설점우편번호가 기입된 비율</p> <p>15. 거래자 계좌번호가 기입된 비율</p> <p>["거래종류코드값이 비계좌(유가증권)+지급, 비계좌(유가증권)+영수일 경우 총 건수"]</p> <p>16. 유가증권의 종류가 기입된 비율</p> <p>17. 관련유가증권번호시작이 기입된 비율</p> <p>["거래종류항목코드 중 비계좌(송금)+영수일 경우 총 건수"]</p> <p>18. 수취인성명이 기입된 비율</p> <p>19. 수취금융기관코드가 기입된 비율</p> <p>20. 수취인 계좌번호가 기입된 비율</p> <p>[FIU제공항목] 충실도(비율%)</p>	
CTR 평가	(O.14.02.02)	[지표] CTR 보고 오류율	FIU제공

분 야	평가 지표[점수]	지표설명	비 고
	CTR 보고 오류율 (10점, 상대(역산)평가)	<p>[설명] CTR보고에 대한 오류보고를 평가</p> <p>[산정 기준/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 보고시점의 전반기말 기준 전 1년간 2. CTR에 대한 오류보고를 평가 (오류보고율이 낮을수록 고득점 부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CTR 보고 후 보고취소한 경우 나. CTR 보고 후 정정보고한 경우 <p>[산출식] CTR보고 오류율 = (CTR오류보고건수(가+나) ÷ 총 CTR보고 건수) × 100</p> <p>[FIU제공항목] CTR 보고 오류율(비율%)</p>	